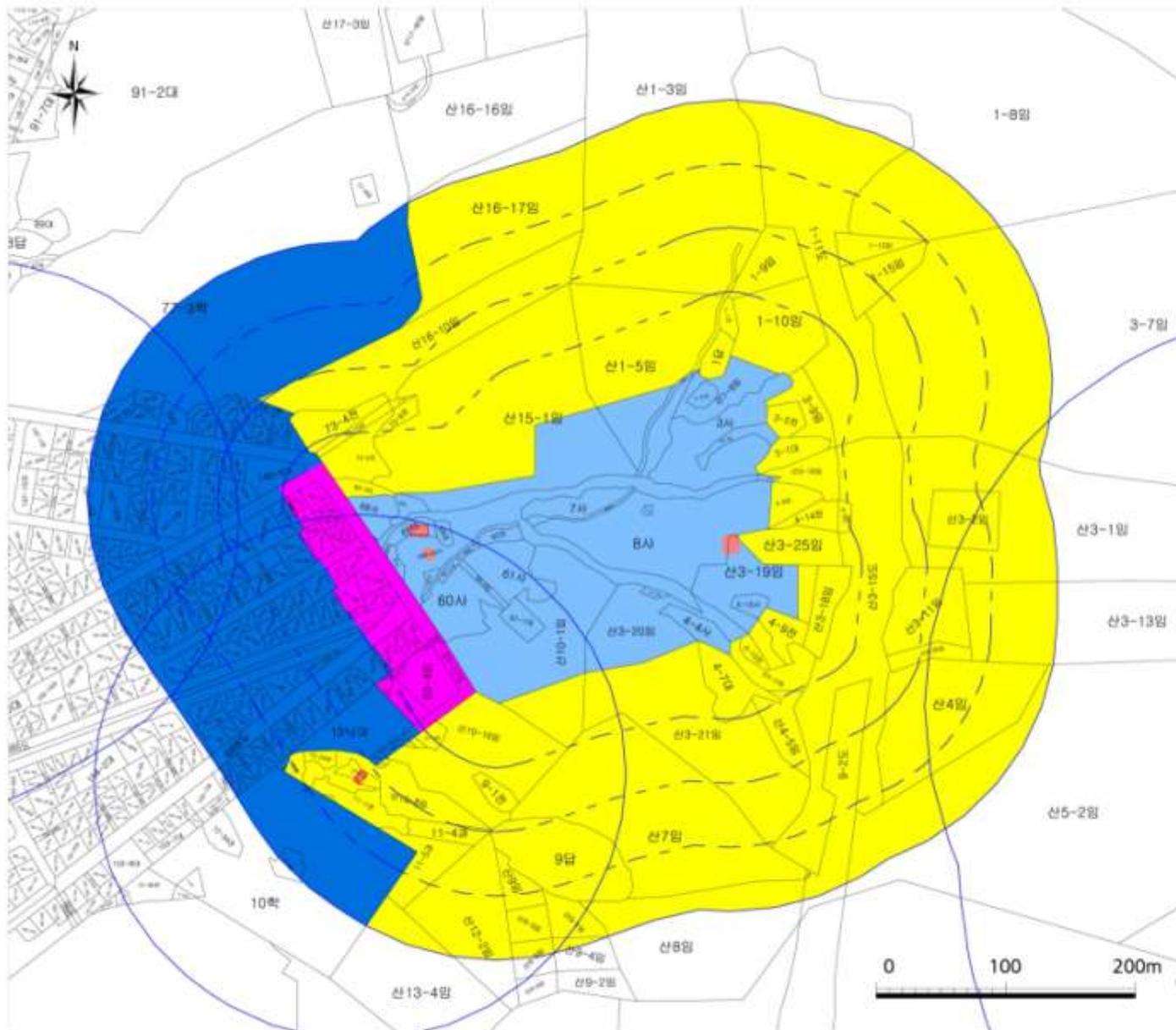


현상변경 기준 공통사항

구 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경사가 3:10이상)
1구역	○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, 증축 허용(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% 이내)	
2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(1층 이하)	○ 건축물 최고높이 7.5m이하(1층 이하)
3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(2층 이하)	○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(2층 이하)
4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(3층 이하)	○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(3층 이하)
5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(4층 이하)	○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(4층 이하)
6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(5층 이하)	○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(5층 이하)
7구역	○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내 재.개축은 허용하며, 증축은 연면적 10%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○ 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○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,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한다 	



시지정문화재 주변
현상변경허용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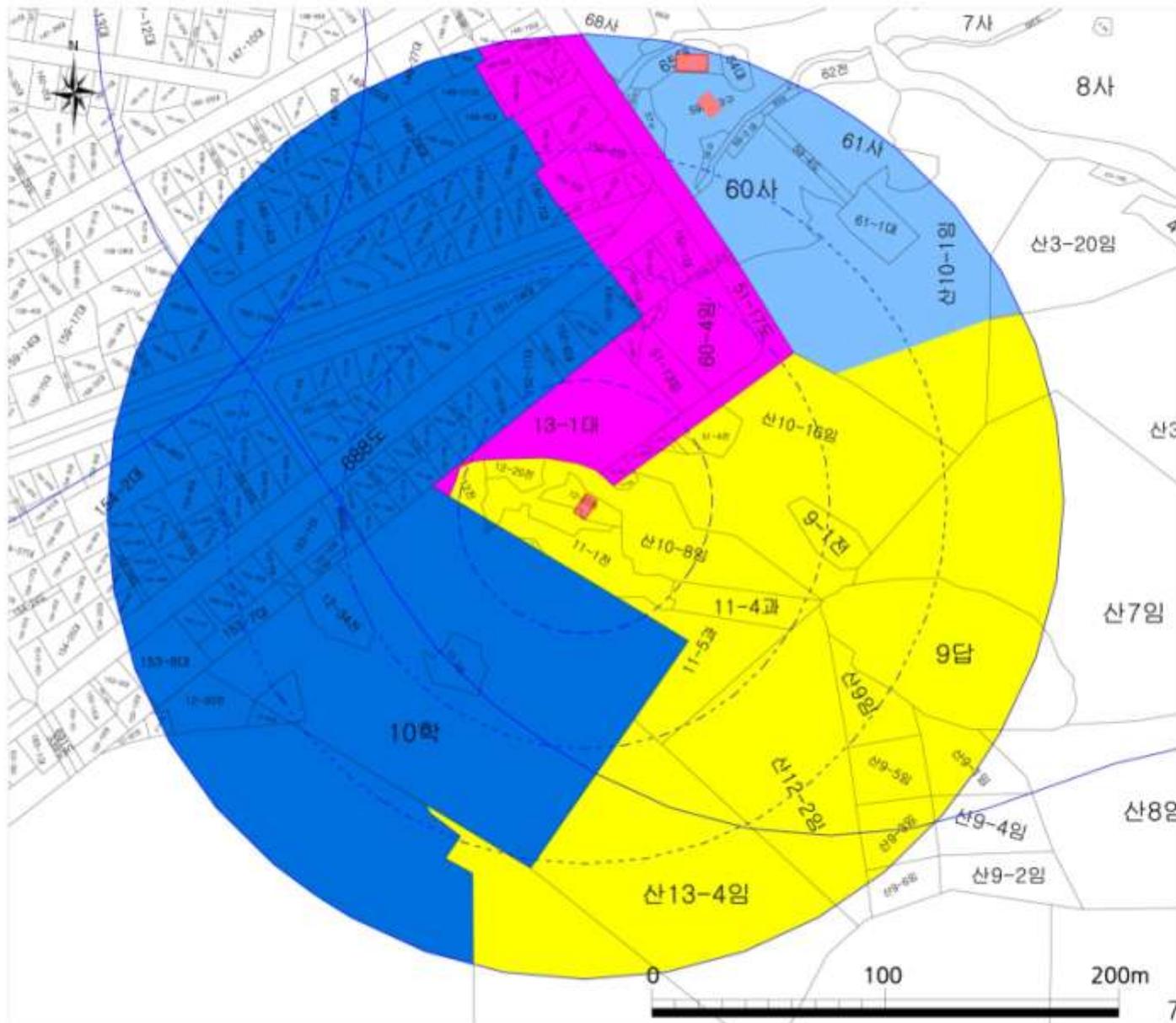
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
남간정사

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65

법 레

- [문화재]
- 시지정 문화재
 - 시지정 보호구역
 - 영향성경도구역
 - 연속지적
- [허용기준구역]
- 1구역
 - 4구역
 - 7구역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반차 유지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

시지정문화재 주변
현상변경허용기준

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제1호
삼매당

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12-21

범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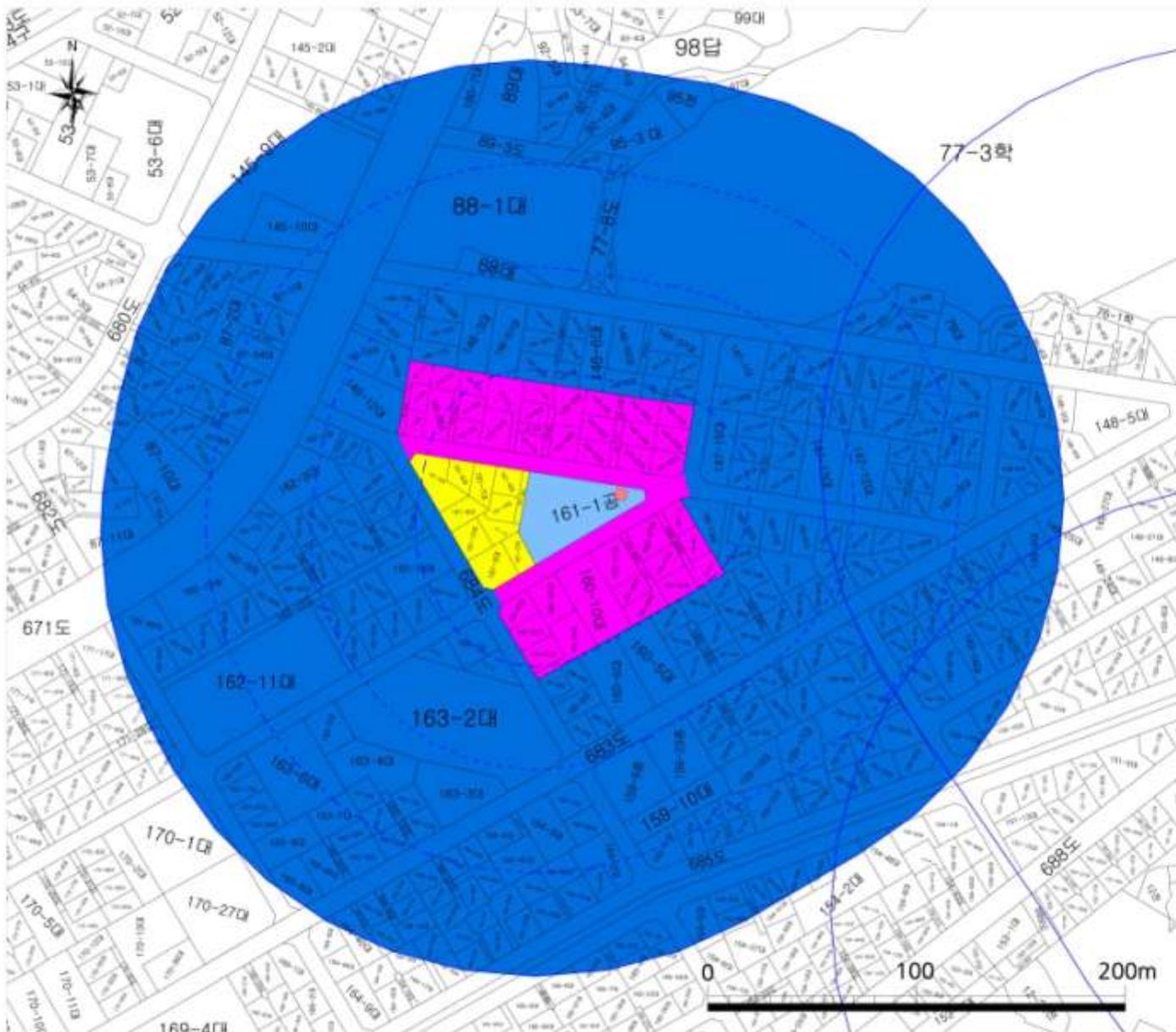
[문화재]

- 시지정 문화재
- 시지정 보호구역
- 영향성경도구역
- 연속지적

[허용기준구역]

- 1구역
- 4구역
- 7구역

본 도면은 삽화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반이 유지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

시지정문화재 주변
현상변경허용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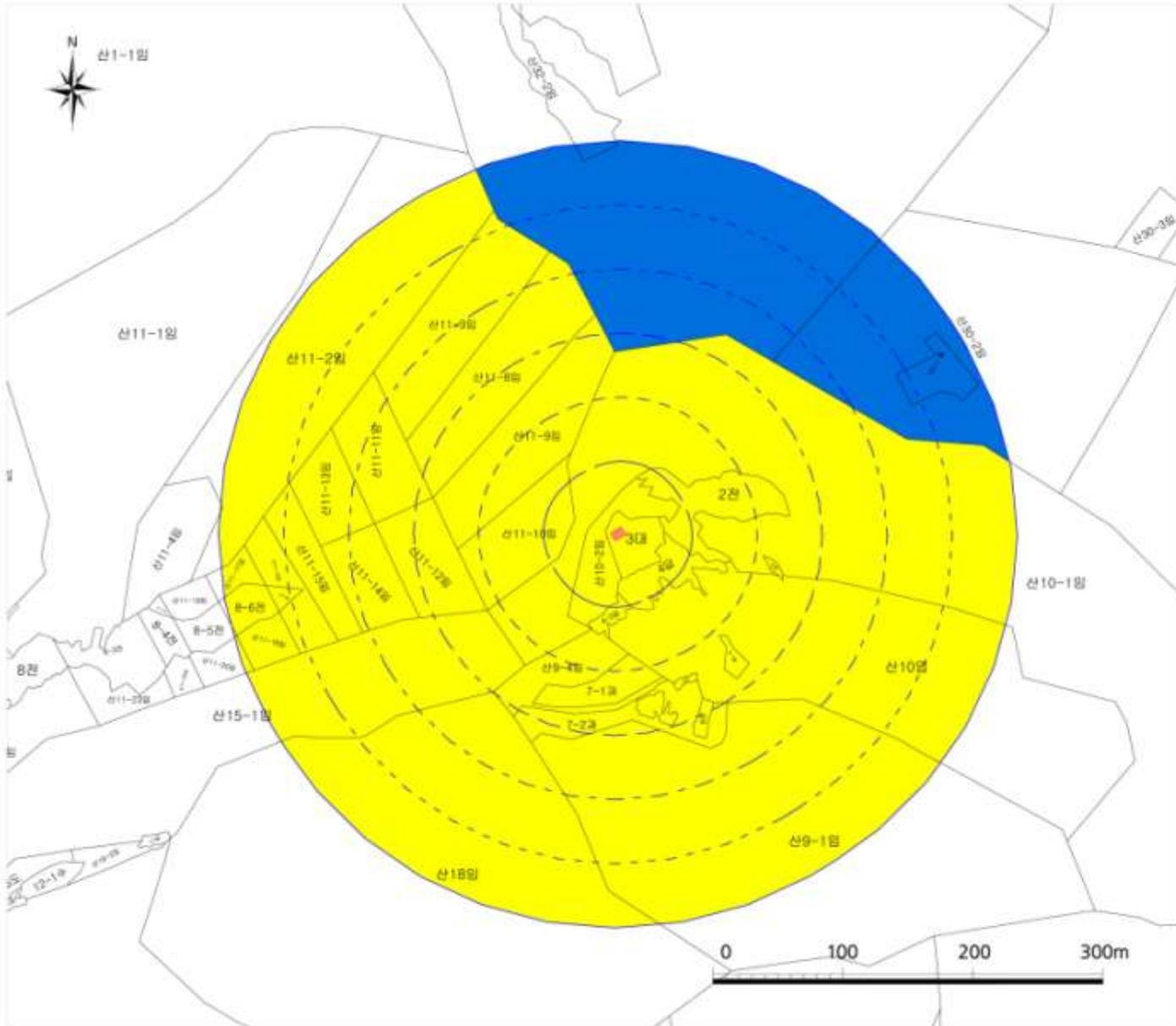
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8호
박팽년 선생 유허비

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161-1

법 레

- [문화재]
- 시지정 문화재
 - 시지정 보호구역
 - 영향성경도구역
 - 연속지적
- [허용기준구역]
- 1구역
 - 4구역
 - 7구역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언외 유의하여 참고하십시오. 촬영시기가 포함됩니다.



시지정문화재 주변
현상변경허용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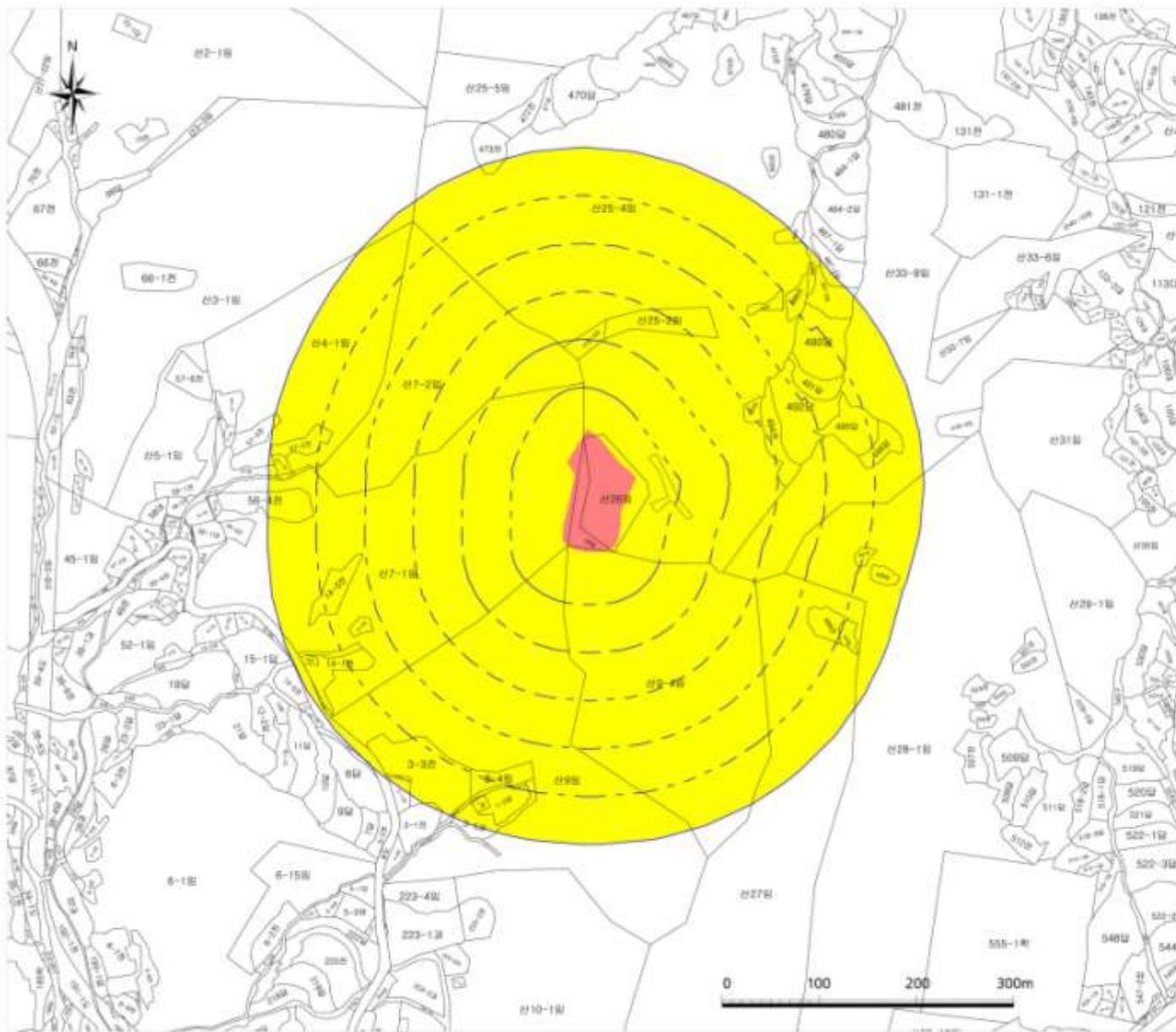
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0호
고산사 대웅전

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3

범례

- [문화재]
- 시지정 문화재
 - 영향성검토구역
 - 연속지적
- [허용기준구역]
- 1구역
 - 7구역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승인의 유무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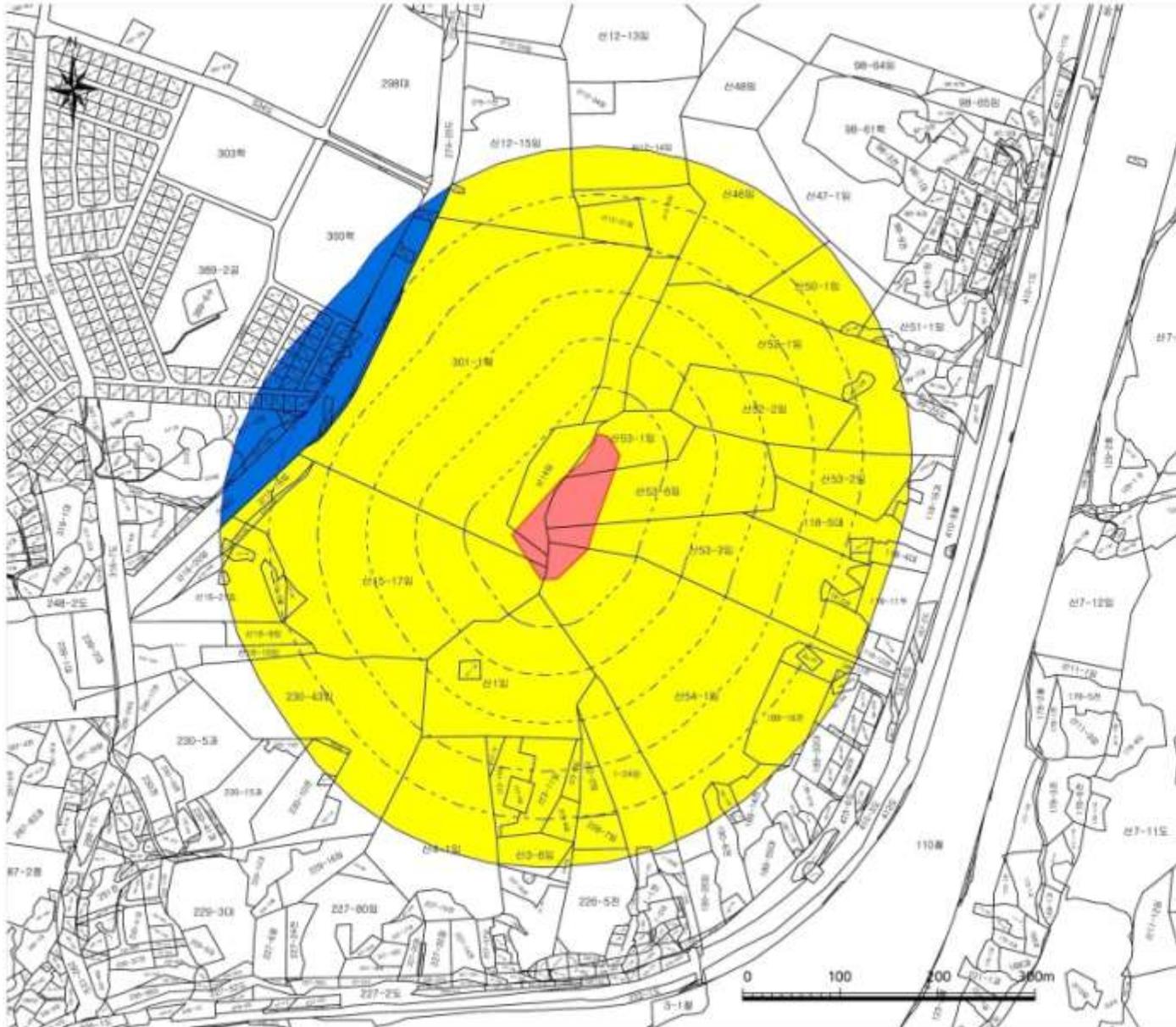
시지정문화재 주변
현상변경허용기준

대전광역시 기념물 제12호
갈현성

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산
7-1외

범 렘

- [문화재]
 - 시지정 문화재
 - 영향성경도구역
 - 연속지적
- [허용기준구역]
 - 1구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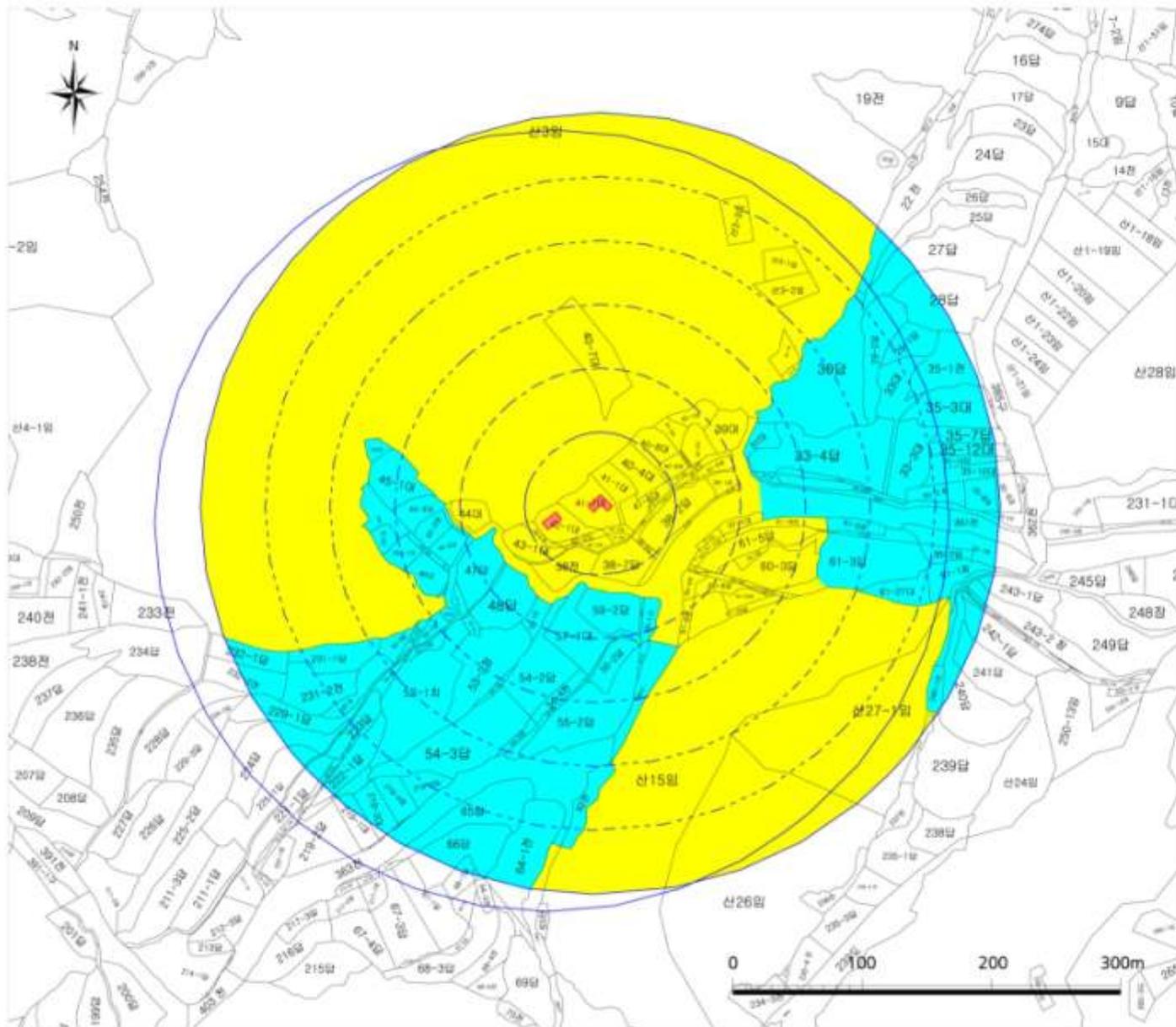
시지경문화재 주변
현상변경허용기준

대전광역시 기념물 제17호
삼정동 산성

대전광역시 동구 삼정동 산
53-1외

범례

- [문화재]
- 시지경 문화재
 - 영향성경토구역
 - 연속지적
- [허용기준구역]
- 1구역
 - 7구역



시지정문화재 주변
현상변경허용기준

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31호
월송재

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 41-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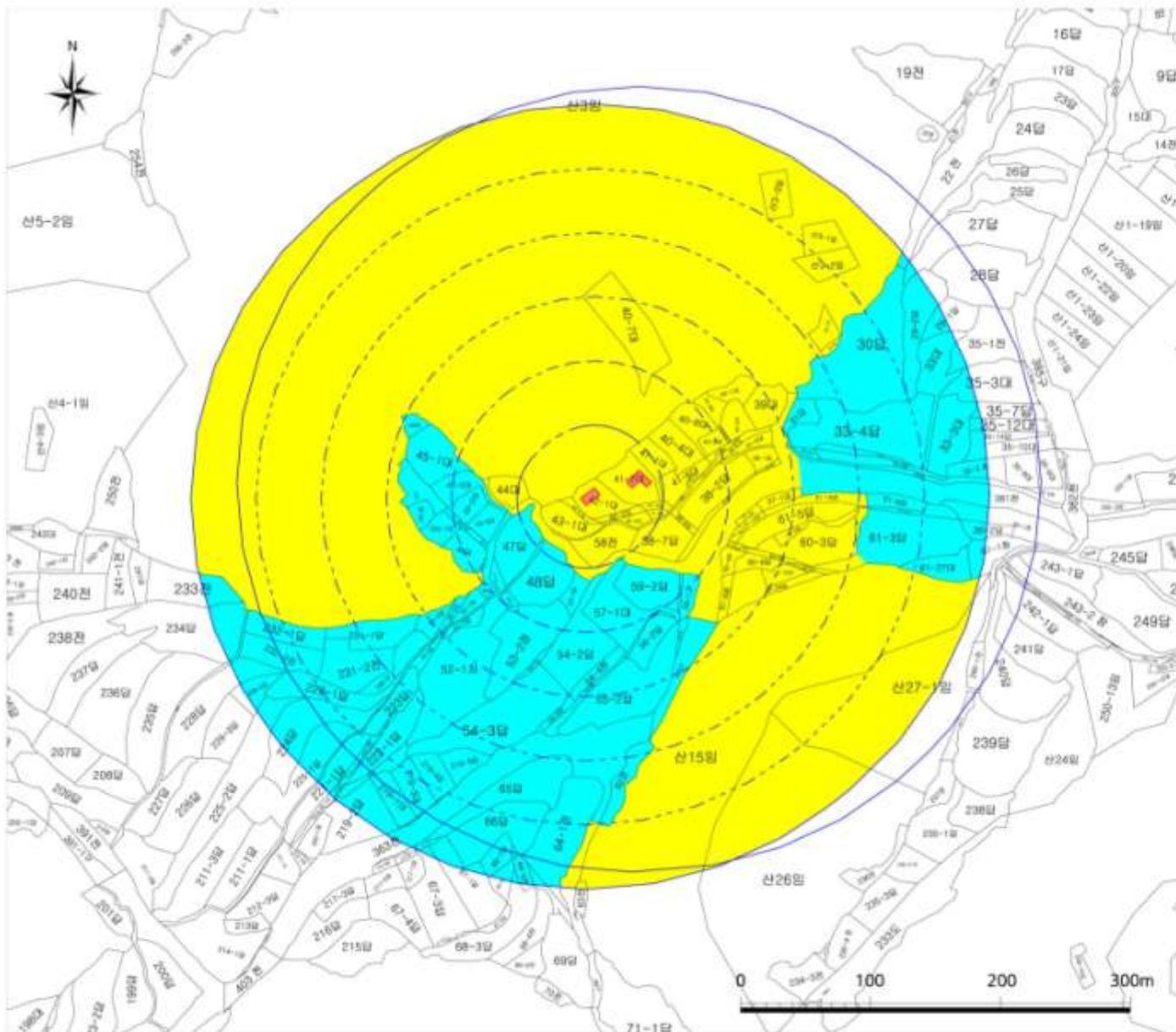
법 레

【문화재】

- 시지정 문화재
- 명형성경토구역
- 연속지적

【허용기준구역】

- 1구역
- 2구역



시지정문화재 주변
현상변경허용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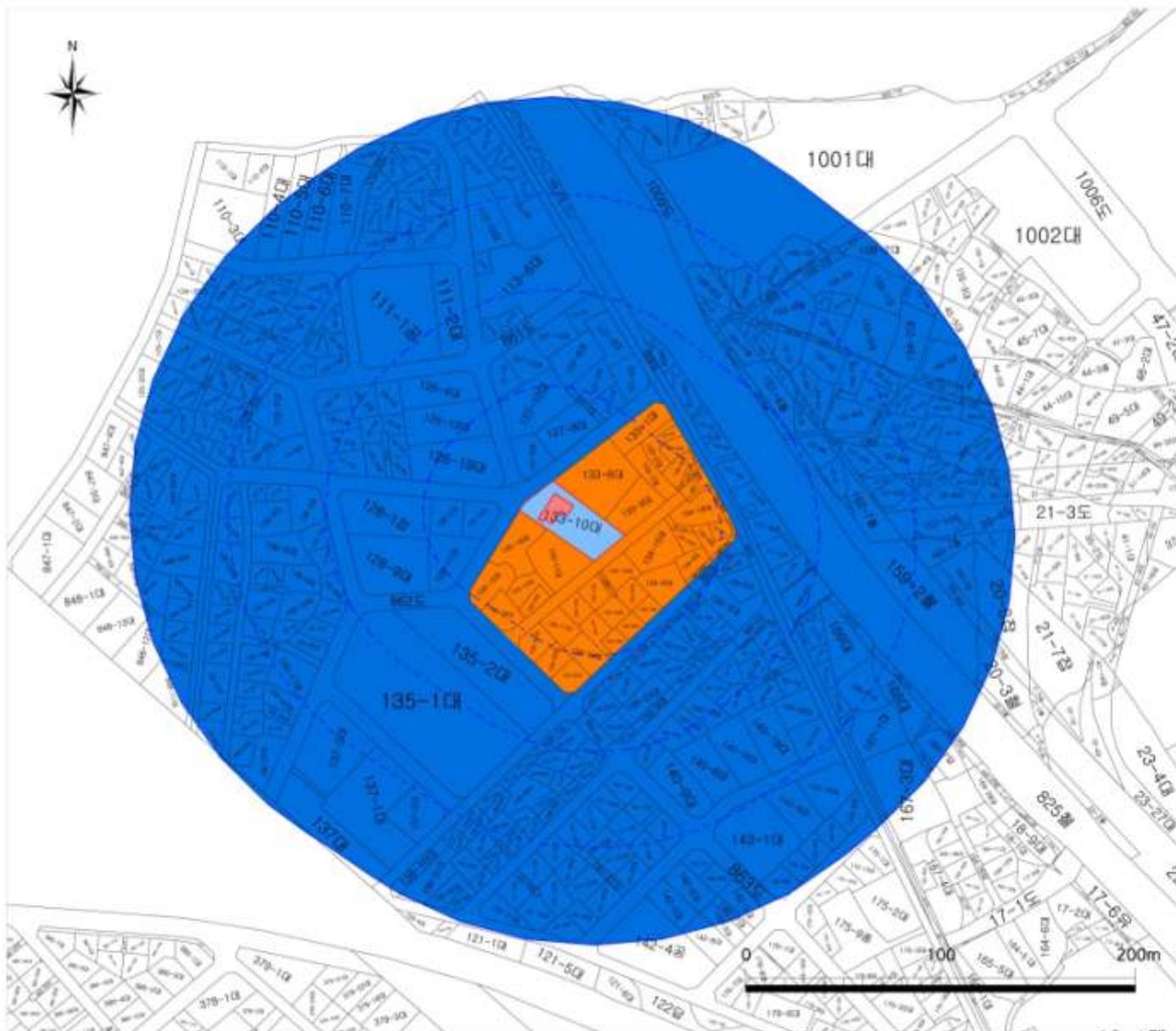
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33호
은진송씨 승지공파 재실

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 42-1

범례

- [문화재]
- 시지정 문화재
- 영향성검토구역
- 연속지적
- [허용기준구역]
- 1구역
- 2구역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용변하 유의하여 취급함으로써 불합치에 책임지지 않습니다.



시지정문화재 주변
현상변경허용기준

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41호
독립지사 김태원 생가 유허

대전광역시 동구 흥도동
133-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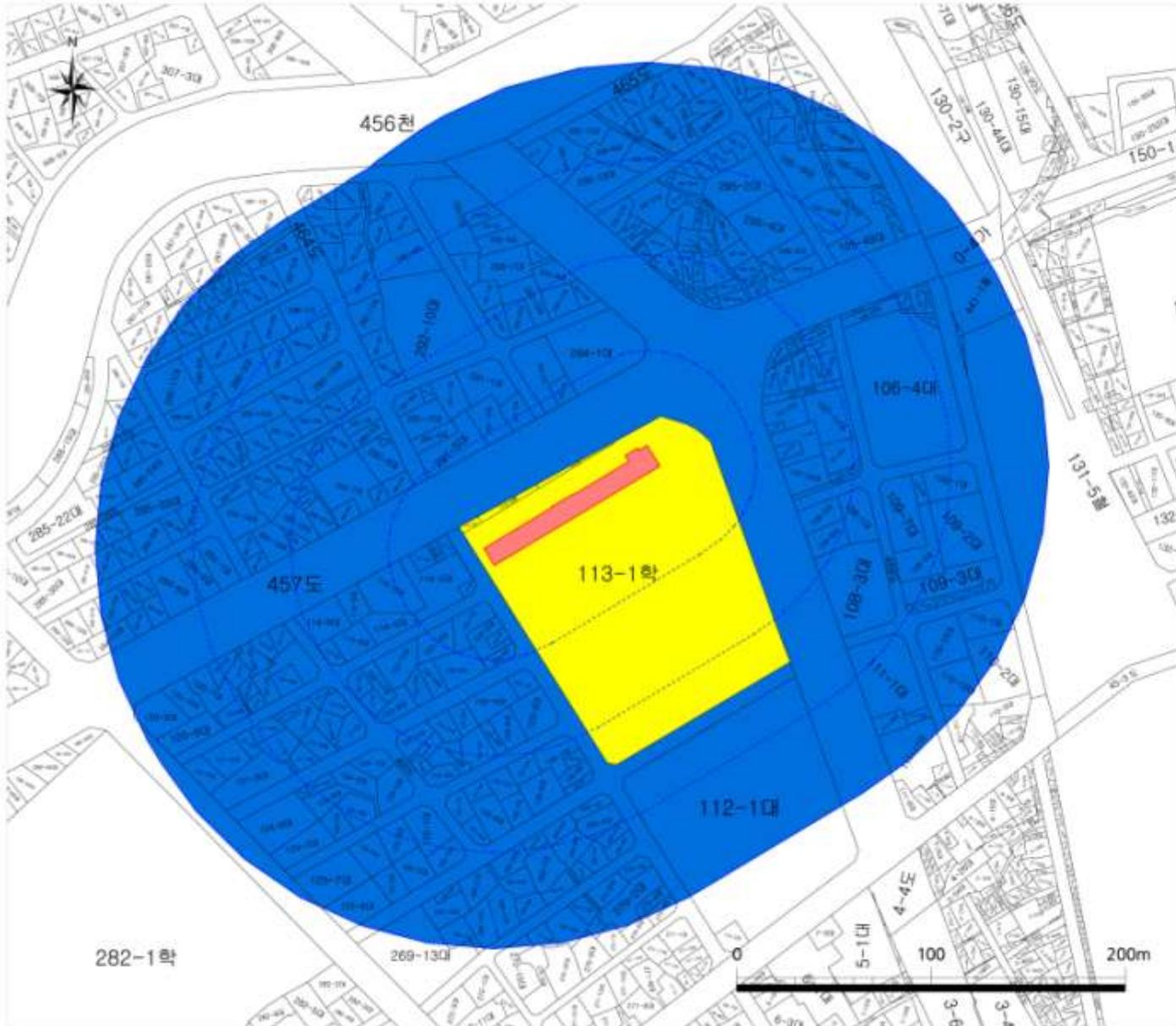
범례

[문화재]

- 시지정 문화재
- 시지정 보호구역
- 영향성경도구역
- 연속지적

[허용기준구역]

- 3구역
- 7구역



시지정문화재 주변
현상변경허용기준

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50호
삼성초등학교 구교사

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
113-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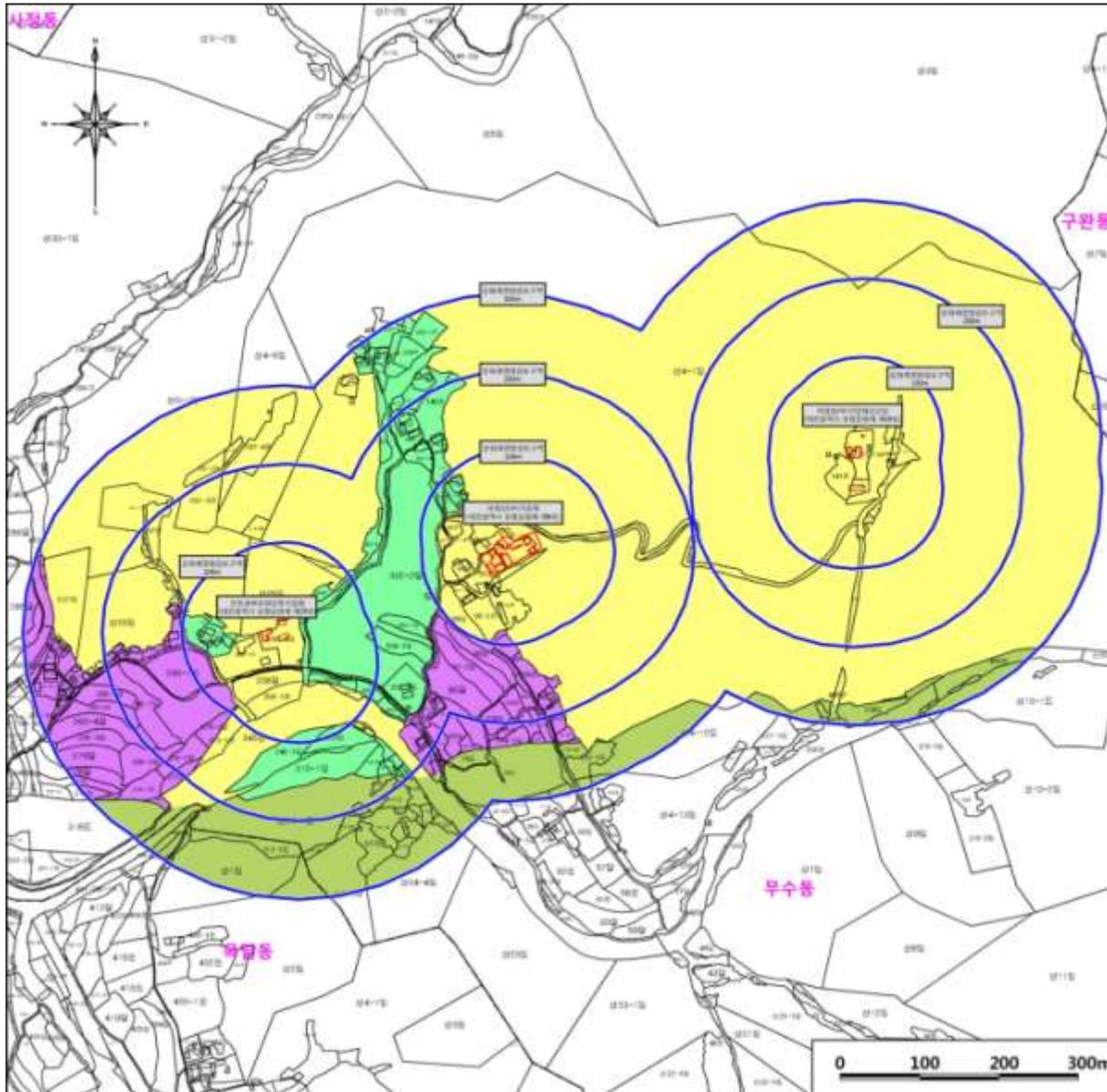
범 례

- [문화재]
- 시지정 문화재
 - 영향성권토지구역
 - 연속지적
- [허용기준구역]
- 1구역
 - 7구역

* 도면상 실면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승인의 유무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미륵원지, 관동묘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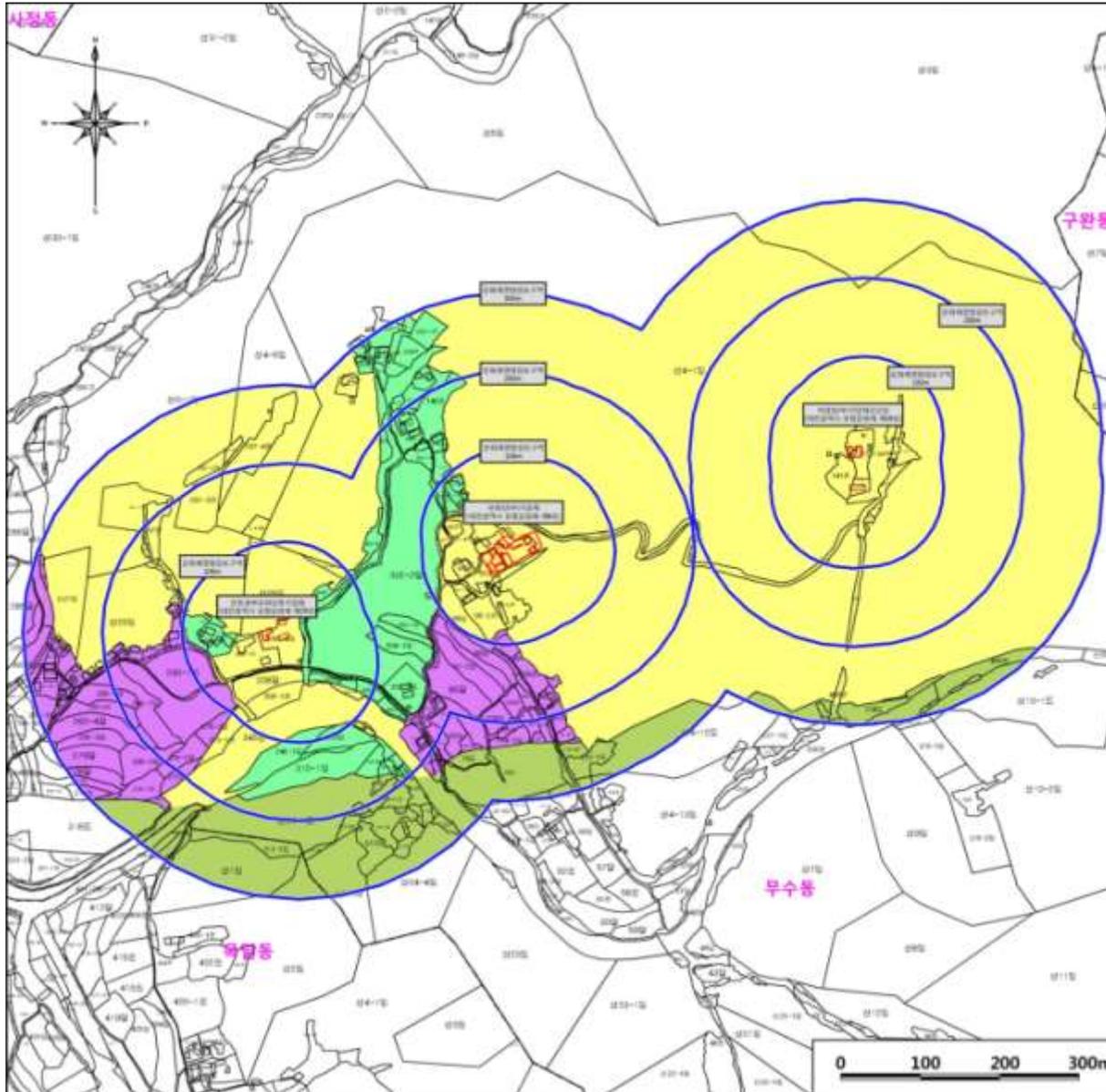
현상변경 허용기준



대전광역시 기념물 제41호, 문화재자료 제37호 미륵원지, 관동묘ru		
대전광역시 동구 마산동 135-2, 96번지		
현상변경 허용기준		
범례		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-신축 불가	
2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
3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
4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
5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
6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
7구역	-시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 내 연면적 증가는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 	

유회당(부)기공재 외 2개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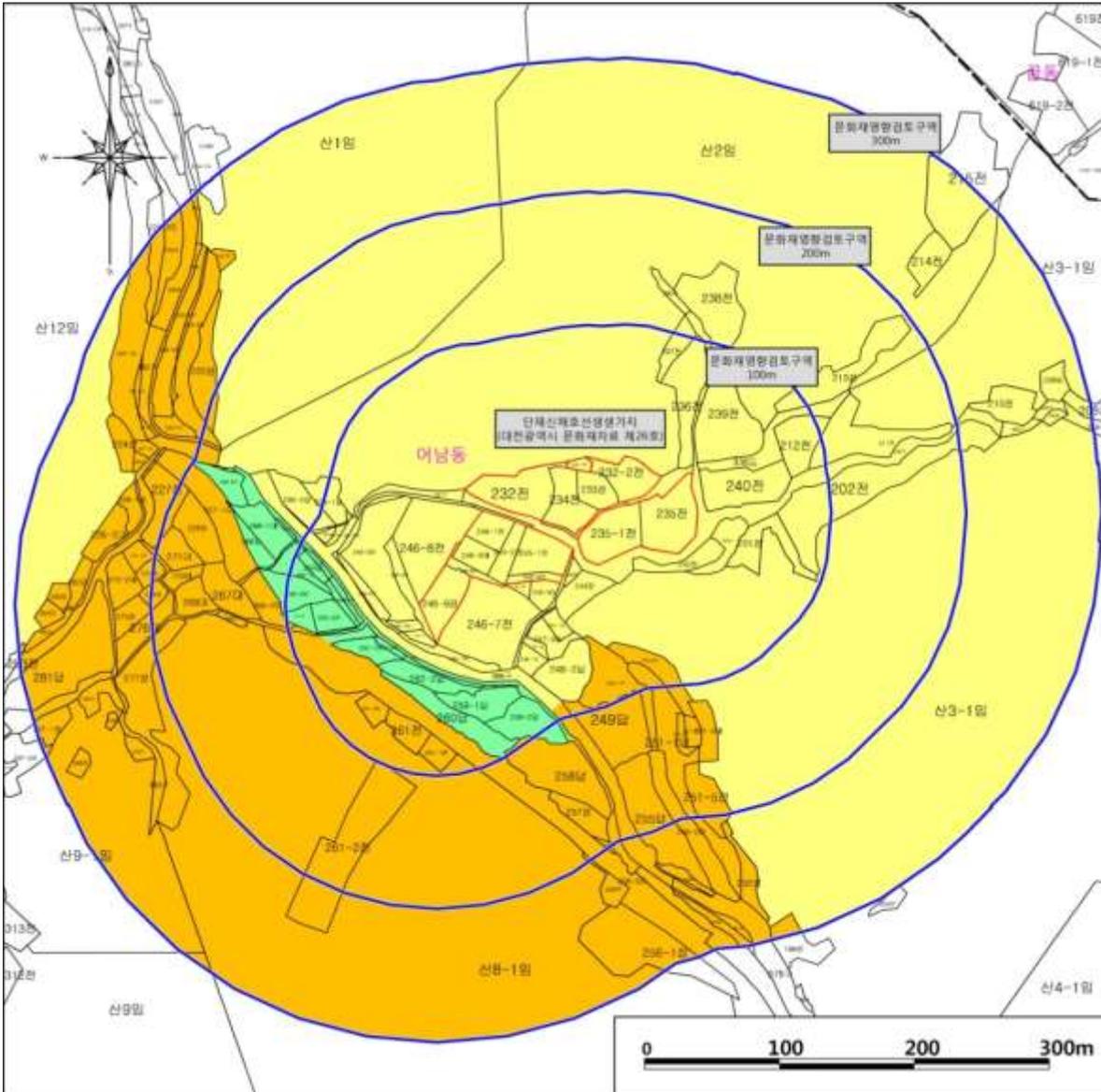
현상변경 허용기준



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6호, 제18호, 29호 유회당(부)기공재, 여경암거업제산신당, 안동권씨유회당종가일원		
대전광역시 중구 무수동 94, 299, 299-1		
현상변경 허용기준		
범례		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-신축 불가	
2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
3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
4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
5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
6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
7구역	-시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 내 연면적 증가는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 	

단재신채호선생생가지

현상변경 허용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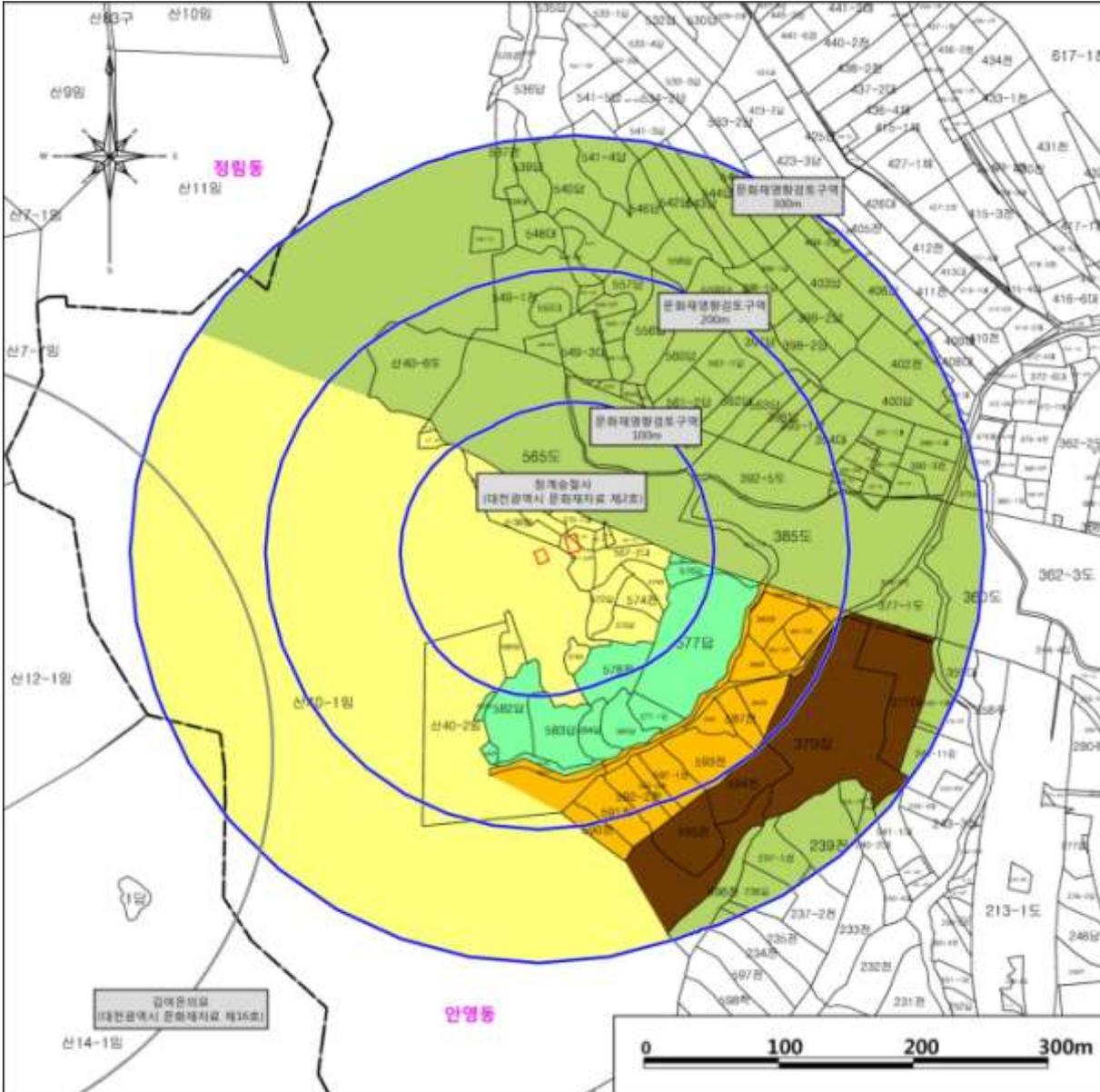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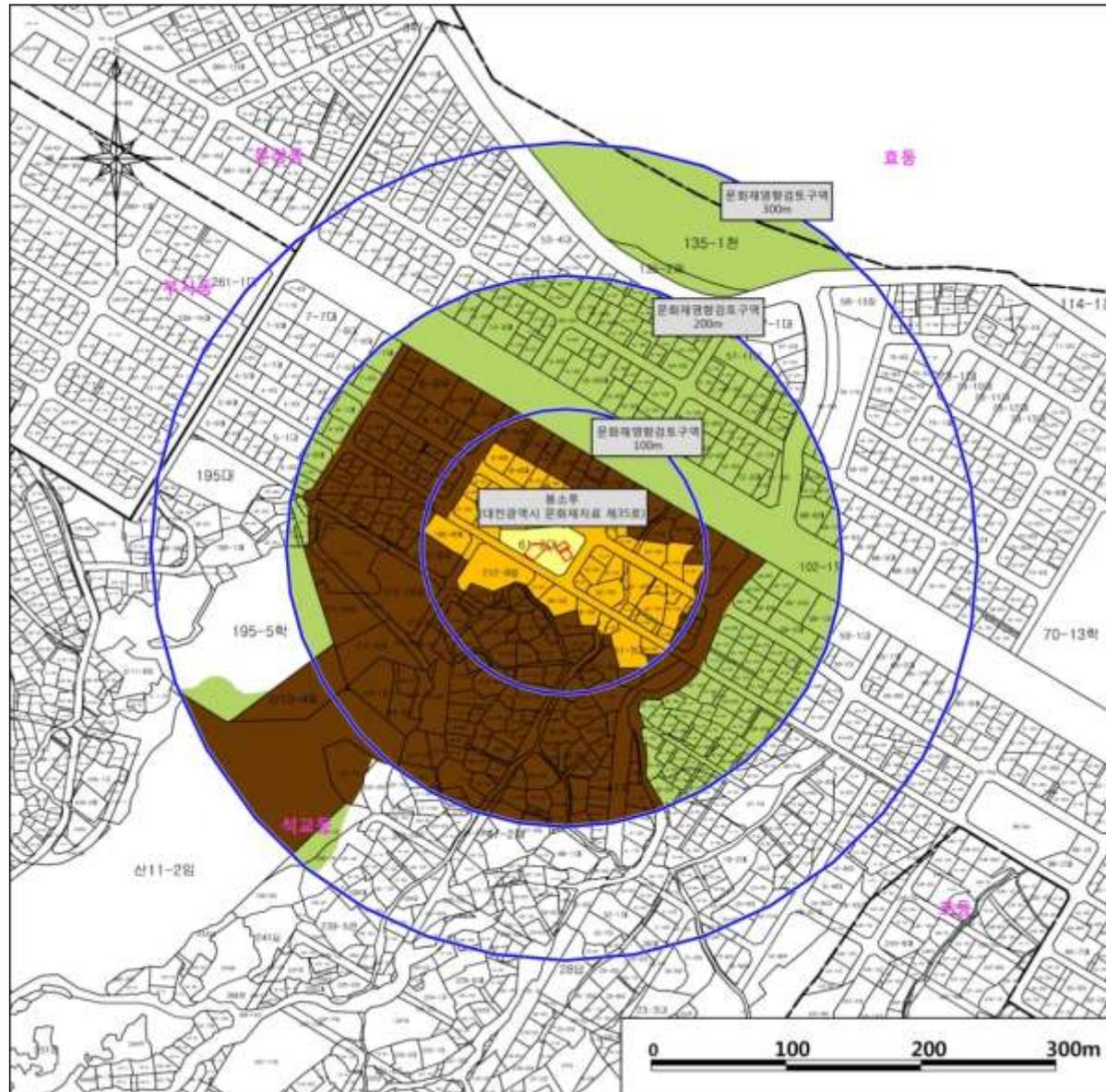
대전광역시 기념물 제26호 단재신채호선생생가지		
대전광역시 중구 어남동 233		
현상변경 허용기준		
범례		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-신축 불가	
2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
3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
4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
5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
6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
7구역	-시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 내 연면적 증가는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 	

창계송절사

현상변경 허용기준

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호 창계송절사		
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560		
현상변경 허용기준		
범례		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-신축 불가	
2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
3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
4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
5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
6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
7구역	-시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 내 연면적 증가는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방풍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 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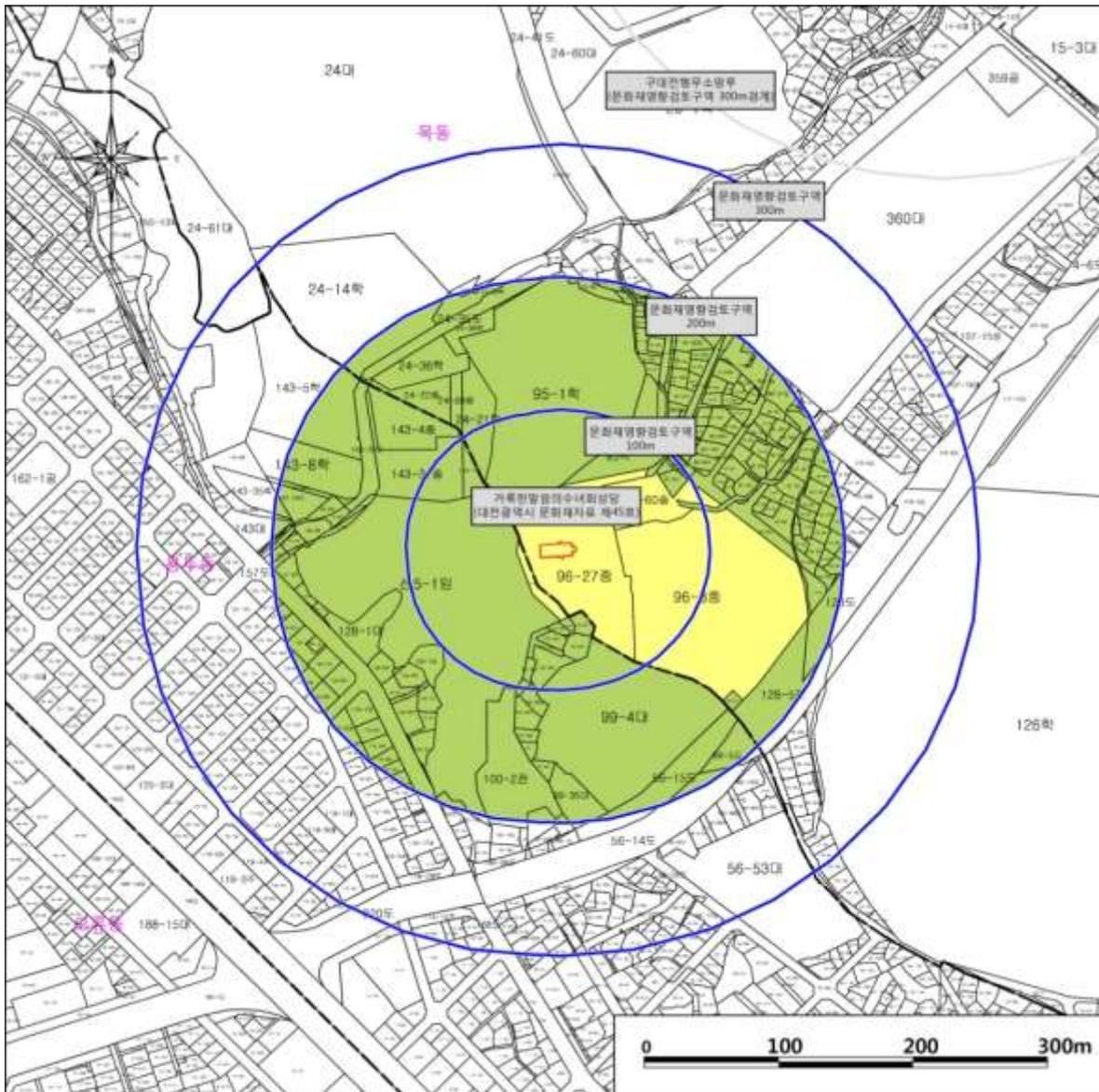




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5호 봉소루		
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61-2		
현상변경 허용기준		
범례		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-신축 불가	
2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
3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
4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
5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
6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
7구역	-사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 내 연면적 증가는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 	

거룩한말씀의수녀회성당

현상변경 허용기준



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45호 거룩한말씀의수녀회성당		
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96-2		
현상변경 허용기준		
범례		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-신축 불가	
2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
3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
4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
5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
6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
7구역	-사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 내 연면적 증가는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 	

대전여중강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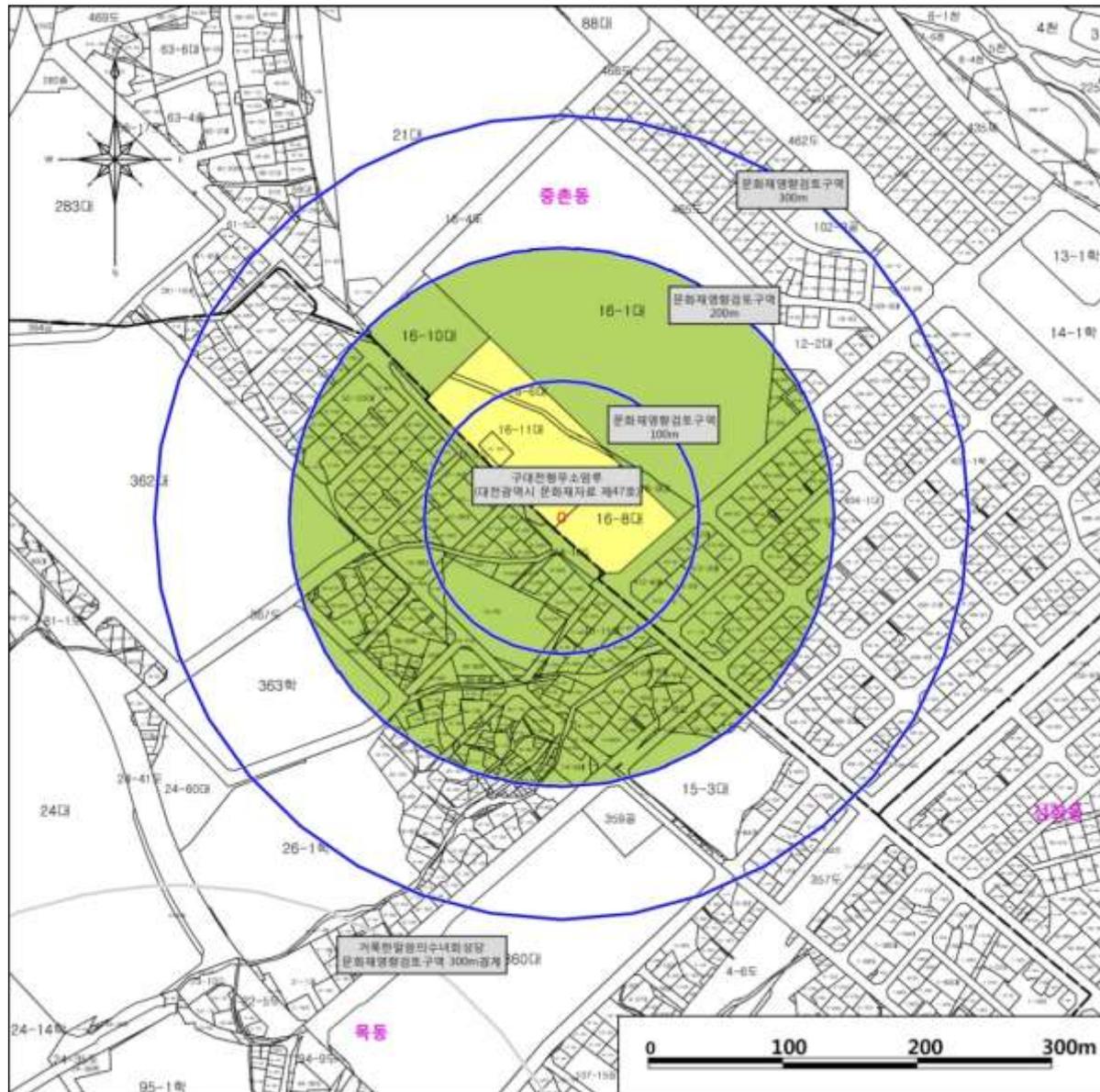
현상변경 허용기준



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46호 대전여중강당		
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18-1		
현상변경 허용기준		
범례		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-신축 불가	
2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
3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
4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
5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
6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
7구역	-시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 내 연면적 증가가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 	

구대전형무소망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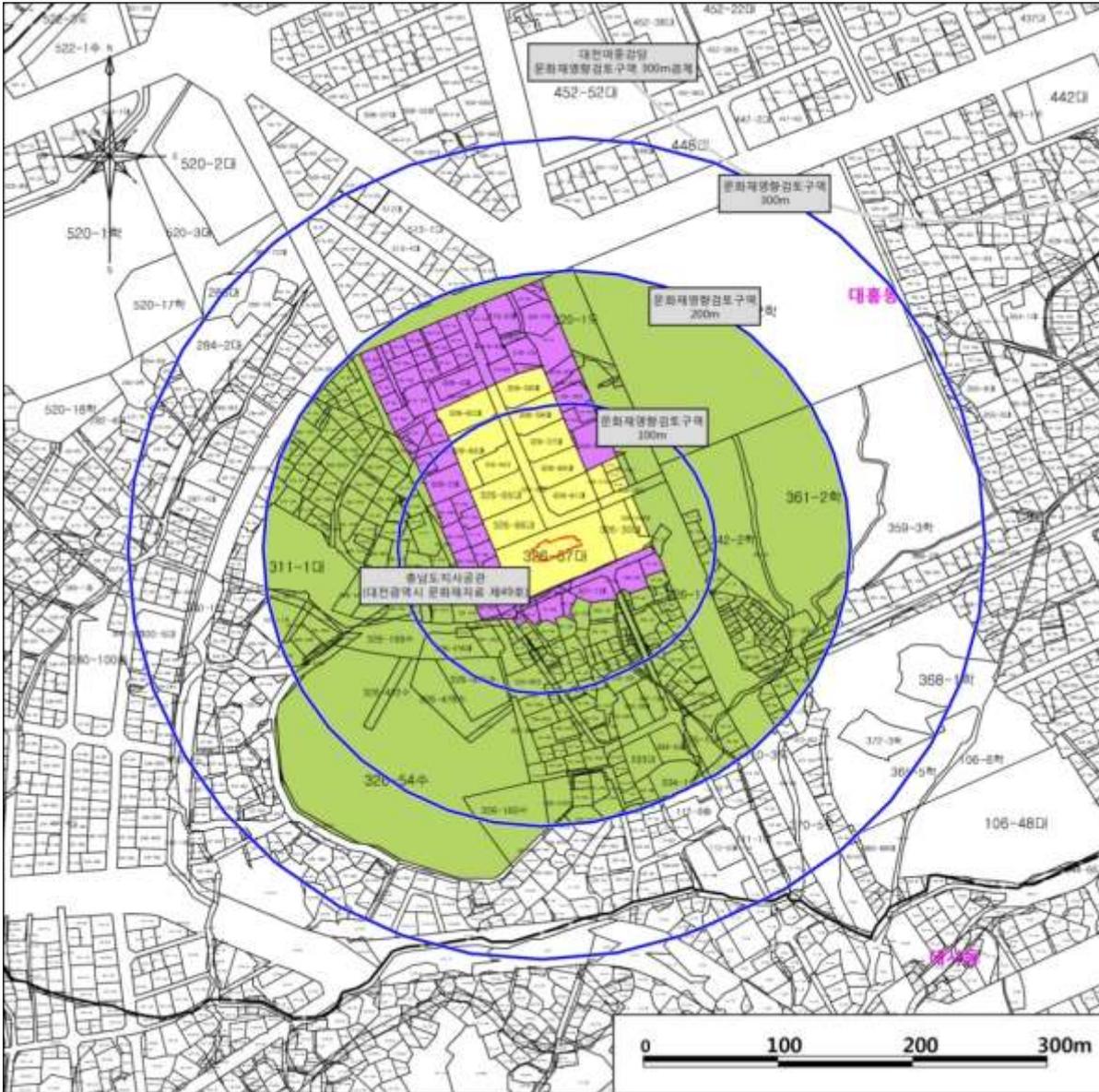
현상변경 허용기준



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47호 구대전형무소망루		
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16-11		
현상변경 허용기준		
범례		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-신축 불가	
2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
3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
4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
5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
6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
7구역	-사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 내 연면적 증가가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 	

충청남도지사공관

현상변경 허용기준



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49호 충청남도지사공관		
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326-67		
현상변경 허용기준		
범례		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-신축 불가	
2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
3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
4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
5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
6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
7구역	-시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 내 연면적 증가는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 	

월평동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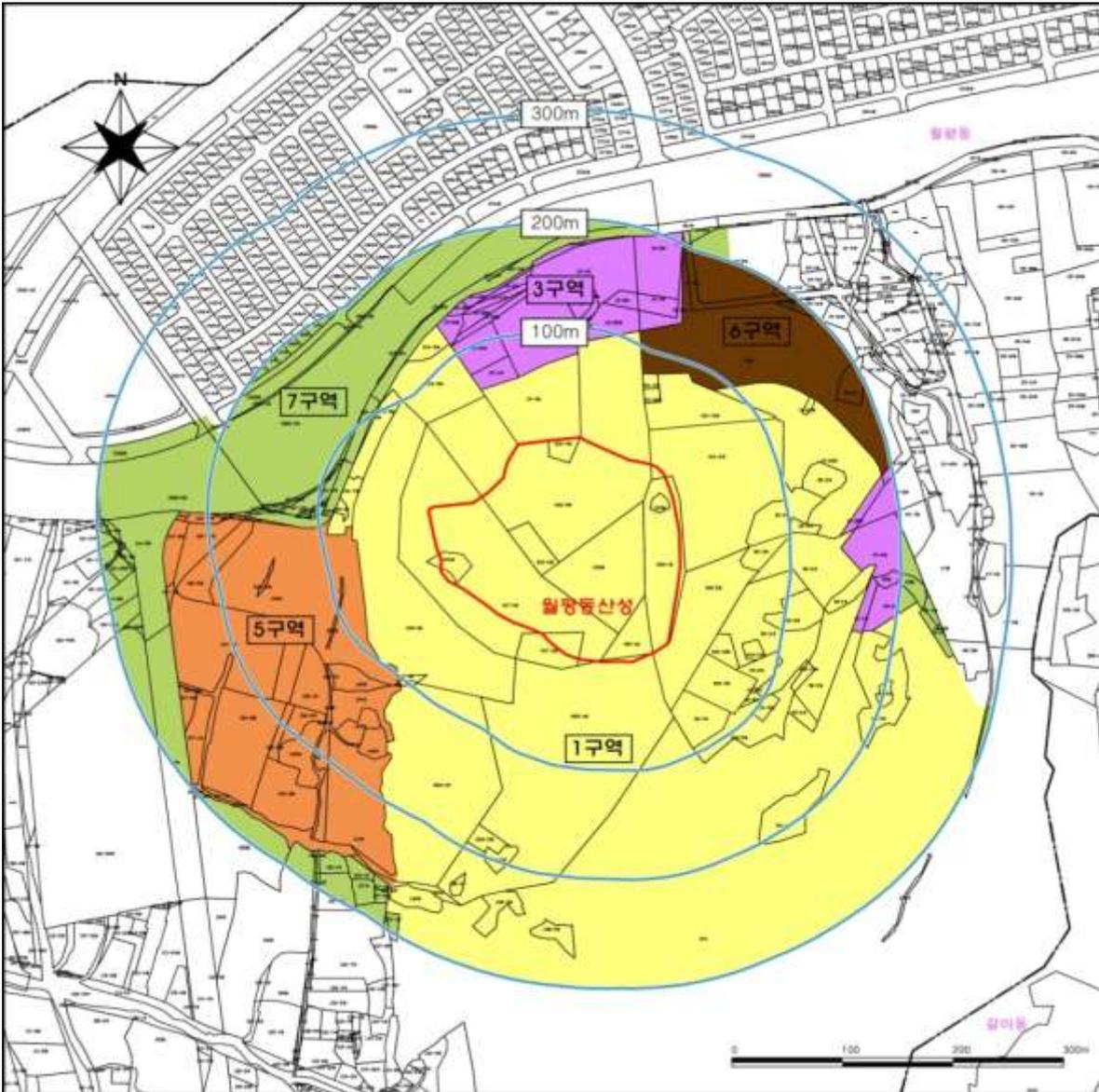
현상변경 허용기준

대전광역시 기념물 제7호 월평동산성

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산12-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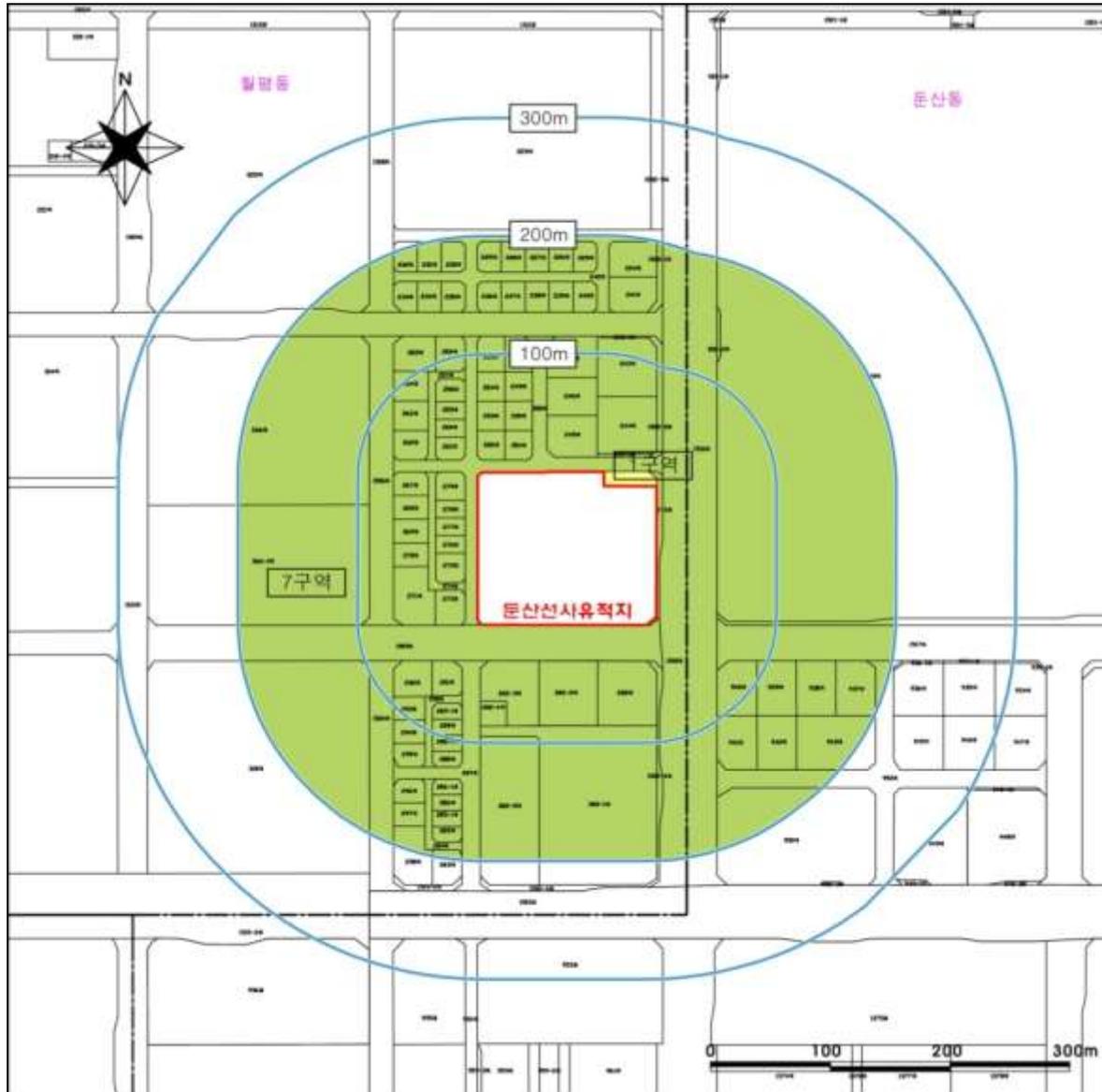
현상변경 허용기준

범례		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<table border="1"> <tr> <th>평슬라브</th> <th>경사지붕(3:10 이상)</th> </tr> </table>	평슬라브
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	
1구역	-현상유지 : 기존 건축물 범위내 개축, 증축 허용 (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% 이내)	
2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 -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	
3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 -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	
4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 -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	
5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 -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	
6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 -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	
7구역	-시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내 재·개축은 허용하며, 증축은 연면적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 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 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도를 실시한다. 	



둔산선사유적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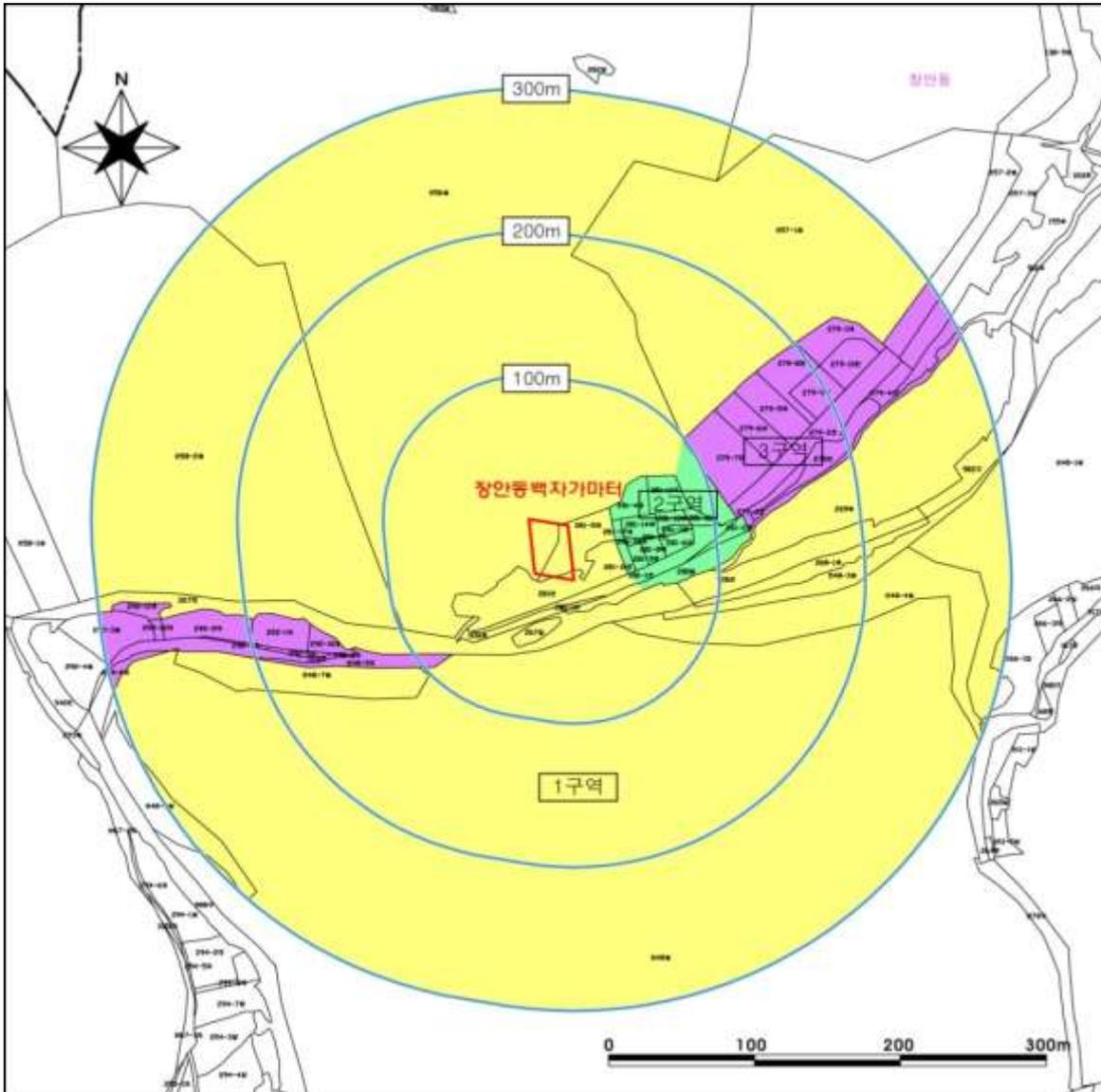
현상변경 허용기준



대전광역시 기념물 제28호 둔산선사유적지		
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81		
현상변경 허용기준		
범례		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평면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<table border="1"> <tr> <td>평슬라브</td> 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 </tr> </table>	평슬라브
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	
1구역	-현상유지 : 기존 건축물 범위내 개축, 증축 허용 (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% 이내)	
2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 -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	
3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 -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	
4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 -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	
5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 -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	
6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 -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	
7구역	-시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을 범위내 재·개축은 허용하며, 증축은 연면적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 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 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평가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 	

장안동백자가마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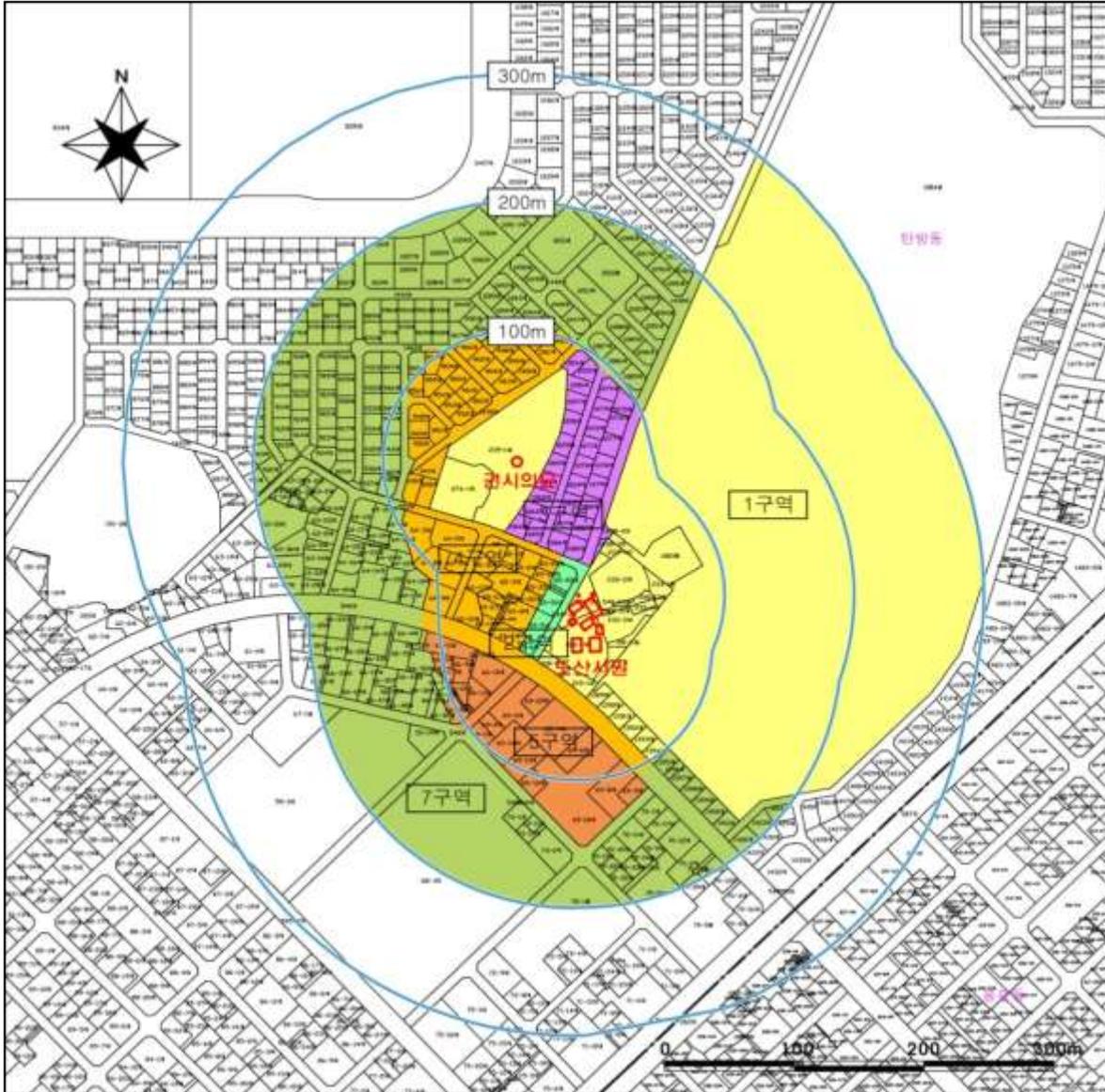
현상변경 허용기준



대전광역시 기념물 제40호 장안동백자가마터	
대전광역시 서구 장안동 산56, 281, 281-5	
현상변경 허용기준	
범례	
	문화재보호구역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
구분	허용기준
	평슬라브 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-현상유지 : 기존 건축물 범위내 개축, 증축 허용 (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% 이내)
2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 -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
3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 -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
4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 -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
5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 -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
6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 -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
7구역	-시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내 재·개축은 허용하며, 증축은 연면적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 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 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

도산서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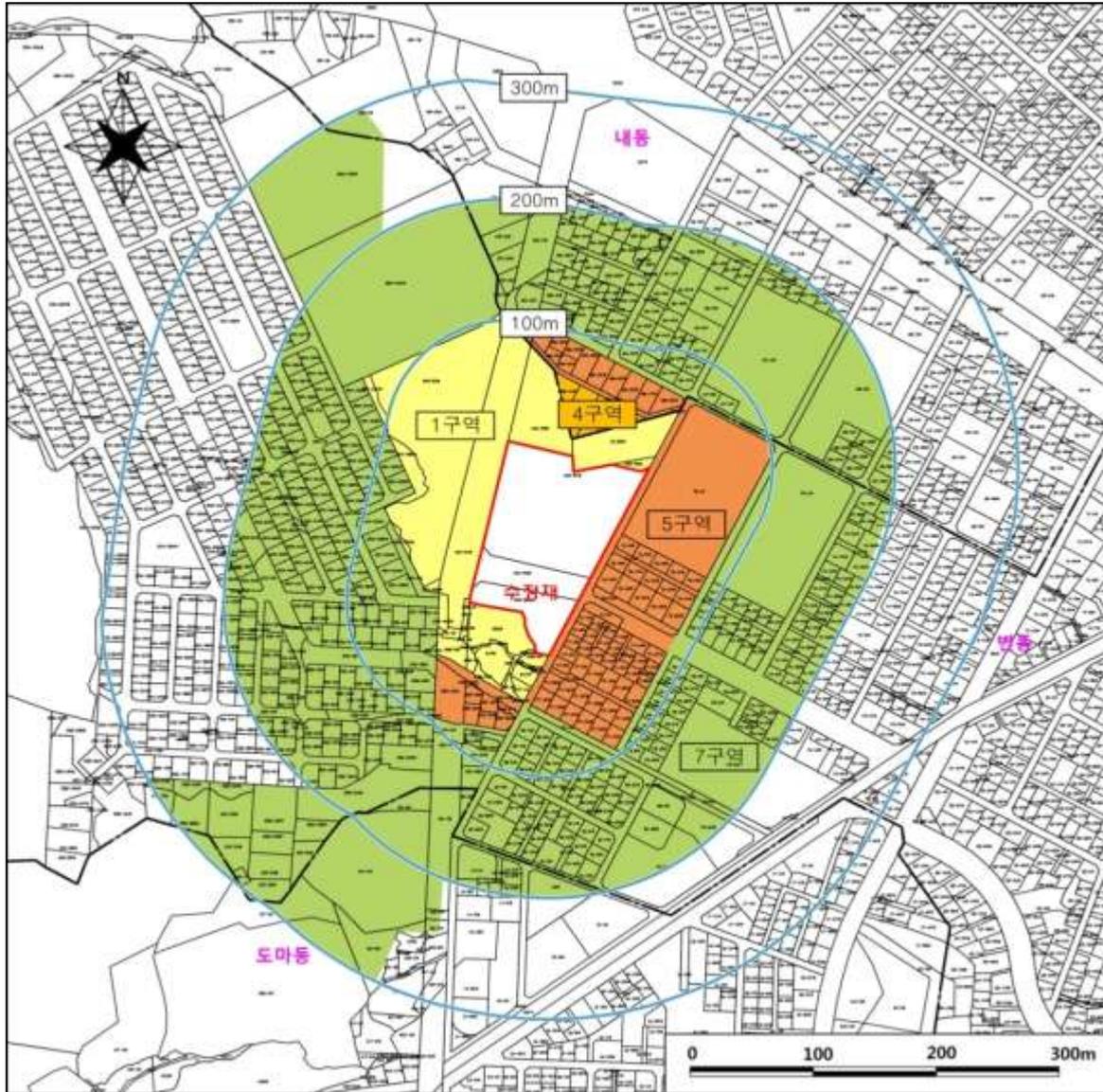
현상변경 허용기준



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호 도산서원		
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233		
현상변경 허용기준		
범례		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-현상유지 : 기존 건축물 범위내 개축, 증축 허용 (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% 이내)	
2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
3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
4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
5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
6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
7구역	-사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내 재·개축은 허용하며, 증축은 연면적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 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 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 	

수정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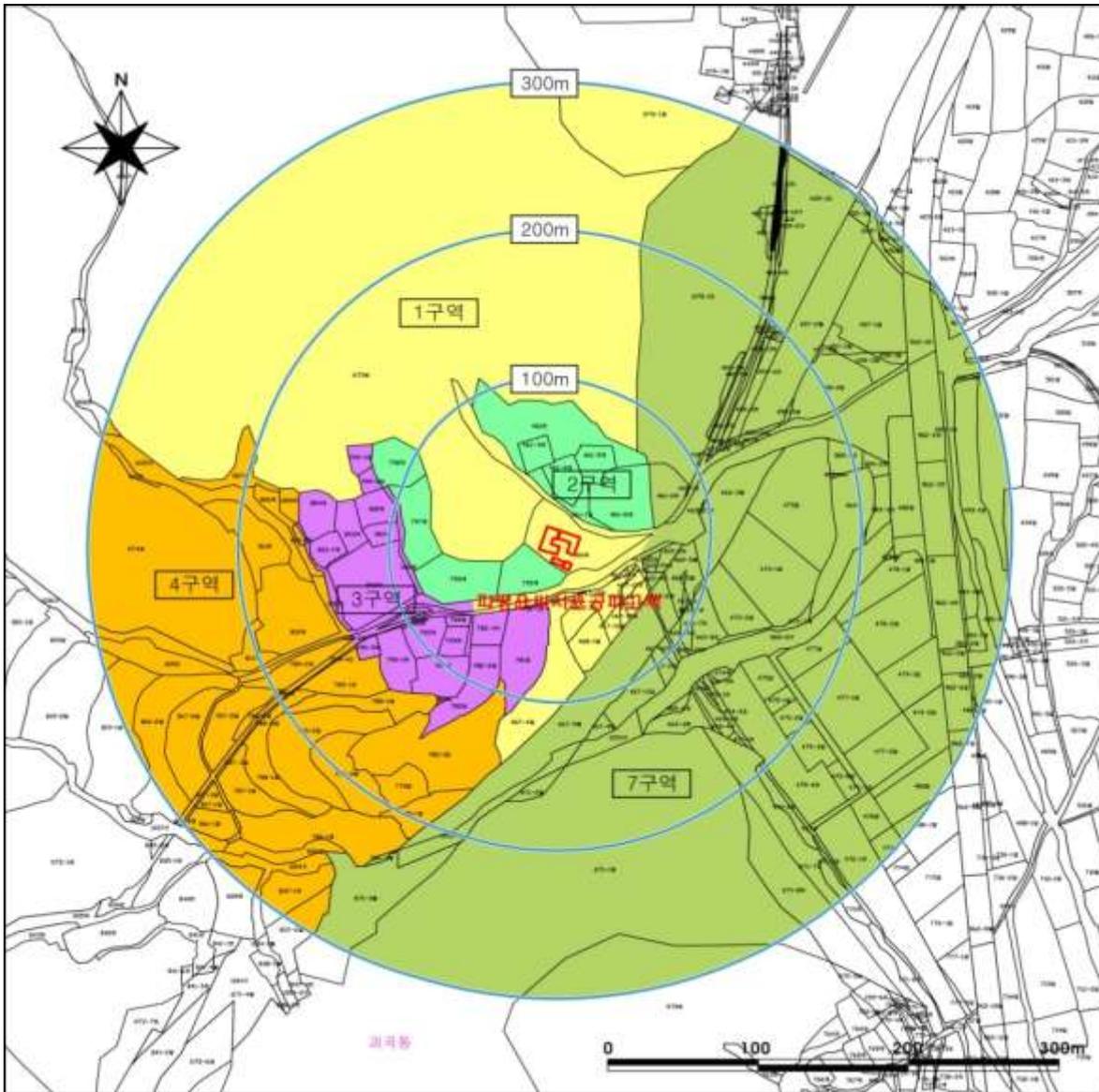
현상변경 허용기준



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0호 수정재		
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50		
현상변경 허용기준		
범례		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<table border="1"> <tr> <td>평슬라브</td> 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 </tr> </table>	평슬라브
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	
1구역	-현상유지 : 기존 건축물 범위내 개축, 증축 허용 (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% 이내)	
2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 -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	
3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 -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	
4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 -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	
5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 -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	
6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 -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	
7구역	-시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내 재·개축은 허용하며, 증축은 연면적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의 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의 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 	

파평윤씨서윤공파고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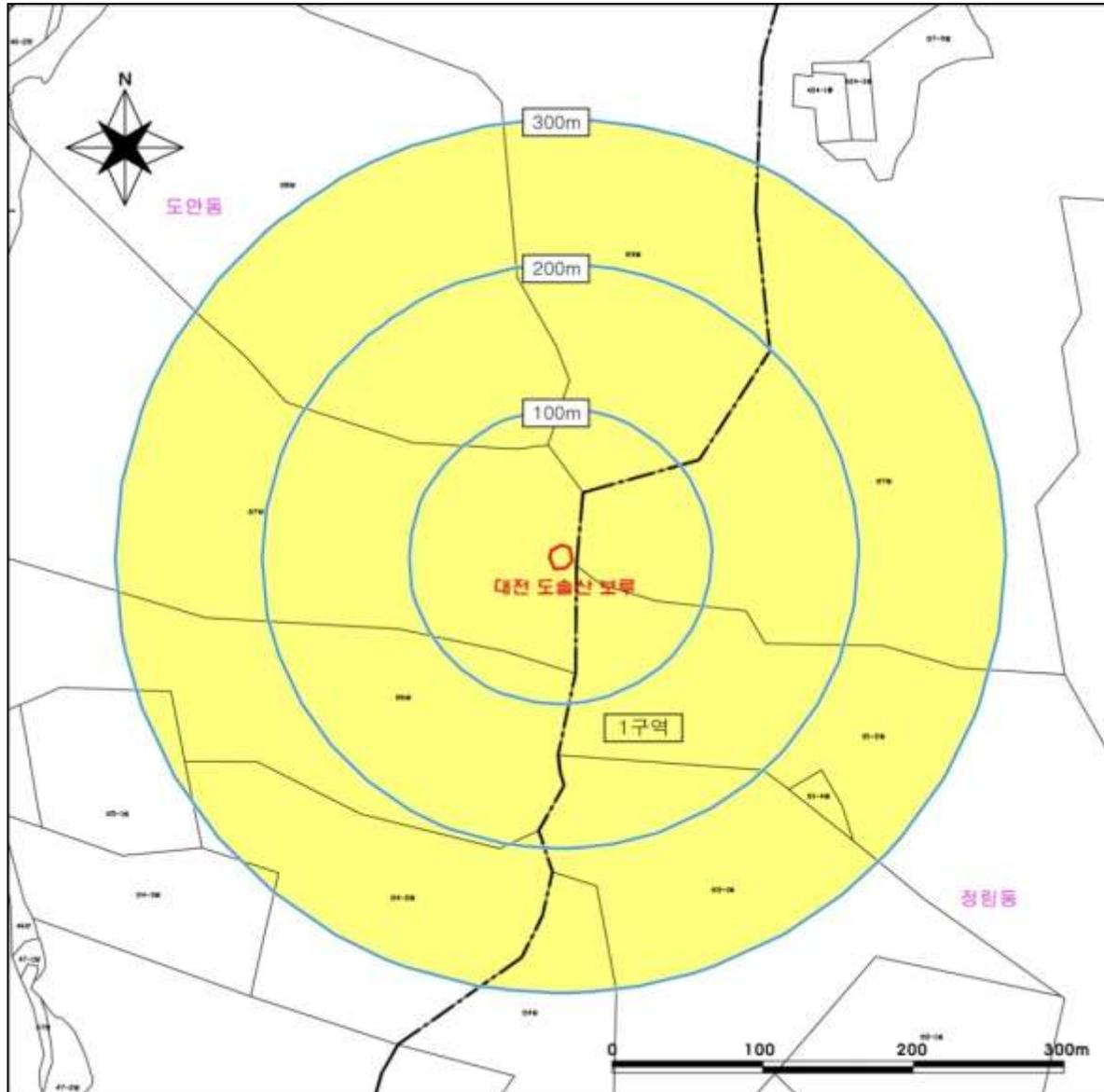
현상변경 허용기준



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4호 파평윤씨서윤공파고택		
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466		
현상변경 허용기준		
범례		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-현상유지 : 기존 건축물 범위내 개축, 증축 허용 (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% 이내)	
2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
3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
4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
5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
6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
7구역	-사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내 재·개축은 허용하며, 증축은 연면적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 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을 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 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 	

대전 도솔산 보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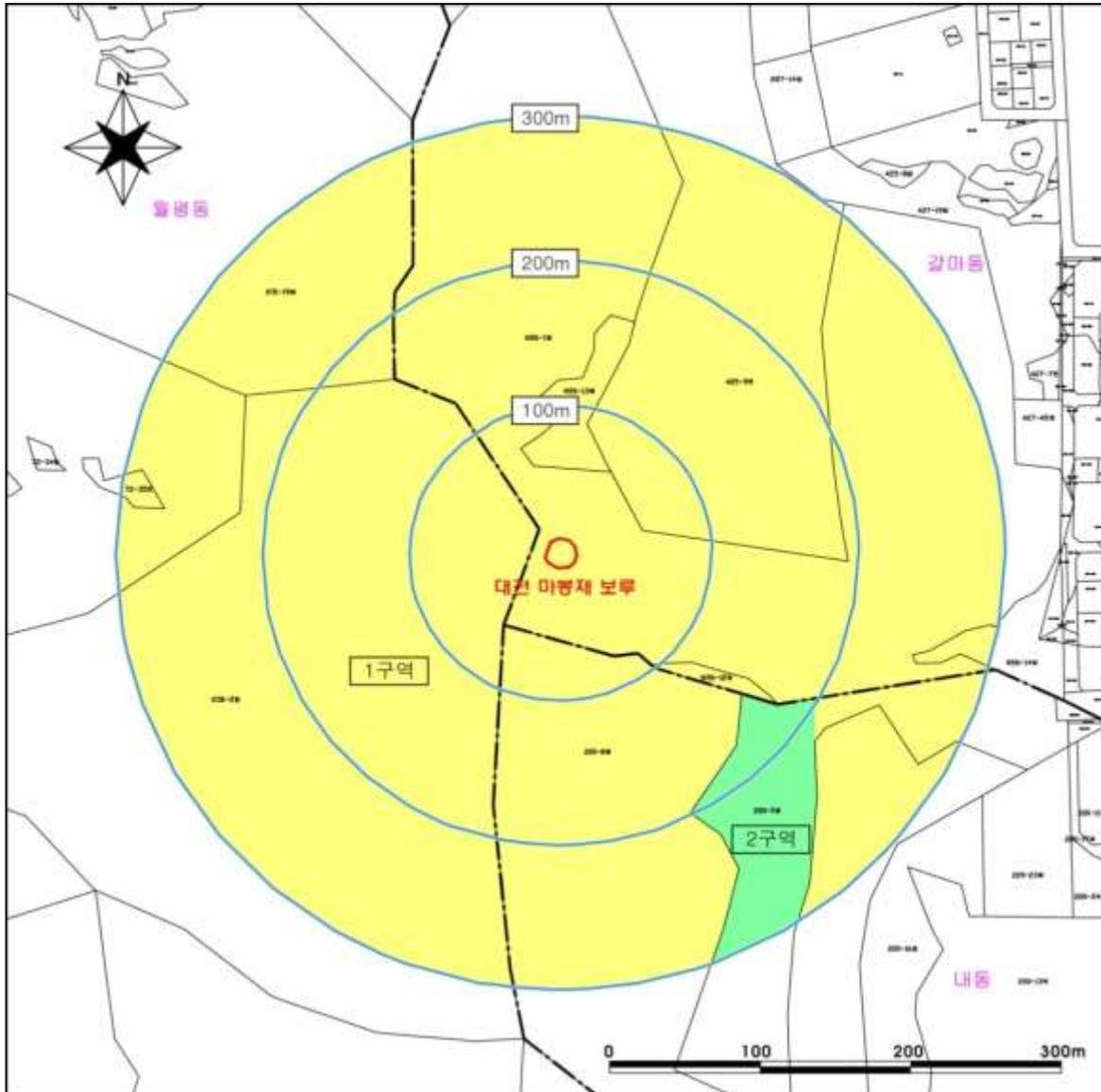
현상변경 허용기준



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55호 대전 도솔산 보루			
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산7			
현상변경 허용기준			
범례			
	문화재보호구역	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	
구분	허용기준		
	<table border="1"> <tr> <td>평슬라브</td> 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 </tr> </table>	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
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		
1구역	-현상유지 : 기존 건축물 범위내 개축, 증축 허용 (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% 이내)		
2구역	<table border="1"> <tr> <td>-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</td> <td>-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</td> </tr> </table>	-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
-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		
3구역	<table border="1"> <tr> <td>-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</td> <td>-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</td> </tr> </table>	-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
-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		
4구역	<table border="1"> <tr> <td>-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</td> <td>-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</td> </tr> </table>	-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
-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		
5구역	<table border="1"> <tr> <td>-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</td> <td>-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</td> </tr> </table>	-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
-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		
6구역	<table border="1"> <tr> <td>-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</td> <td>-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</td> </tr> </table>	-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
-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		
7구역	-시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내 재·개축은 허용하며, 증축은 연면적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 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 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 		

대전 마봉재 보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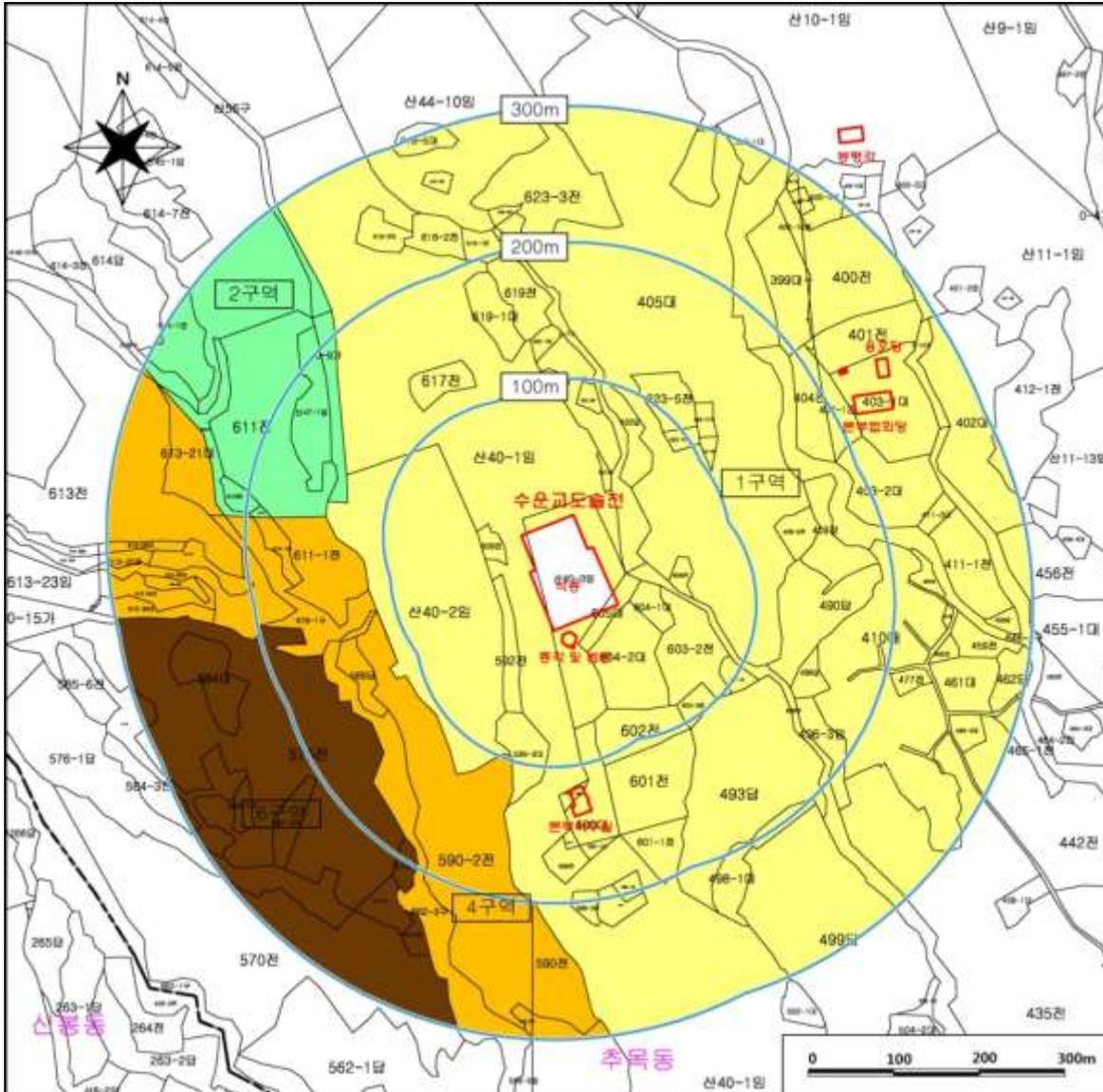
현상변경 허용기준



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56호 대전 마봉재 보루		
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산26-1		
현상변경 허용기준		
범례		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<table border="1"> <tr> <td>평슬라브</td> 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 </tr> </table>	평슬라브
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	
1구역	-현상유지 : 기존 건축물 범위내 개축, 증축 허용 (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% 이내)	
2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 -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	
3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 -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	
4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 -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	
5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 -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	
6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 -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	
7구역	-시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내 재·개축은 허용하며, 증축은 연면적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 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 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 	

수운교도솔천

현상변경 허용기준



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8호 수운교도솔천

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산40

현상변경 허용기준

범례		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평층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-신축불가	
2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
3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
4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
5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
6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
7구역	-사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 내 연면적 증가는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 	

내동리지석묘, 칠성당지석묘군

현상변경 허용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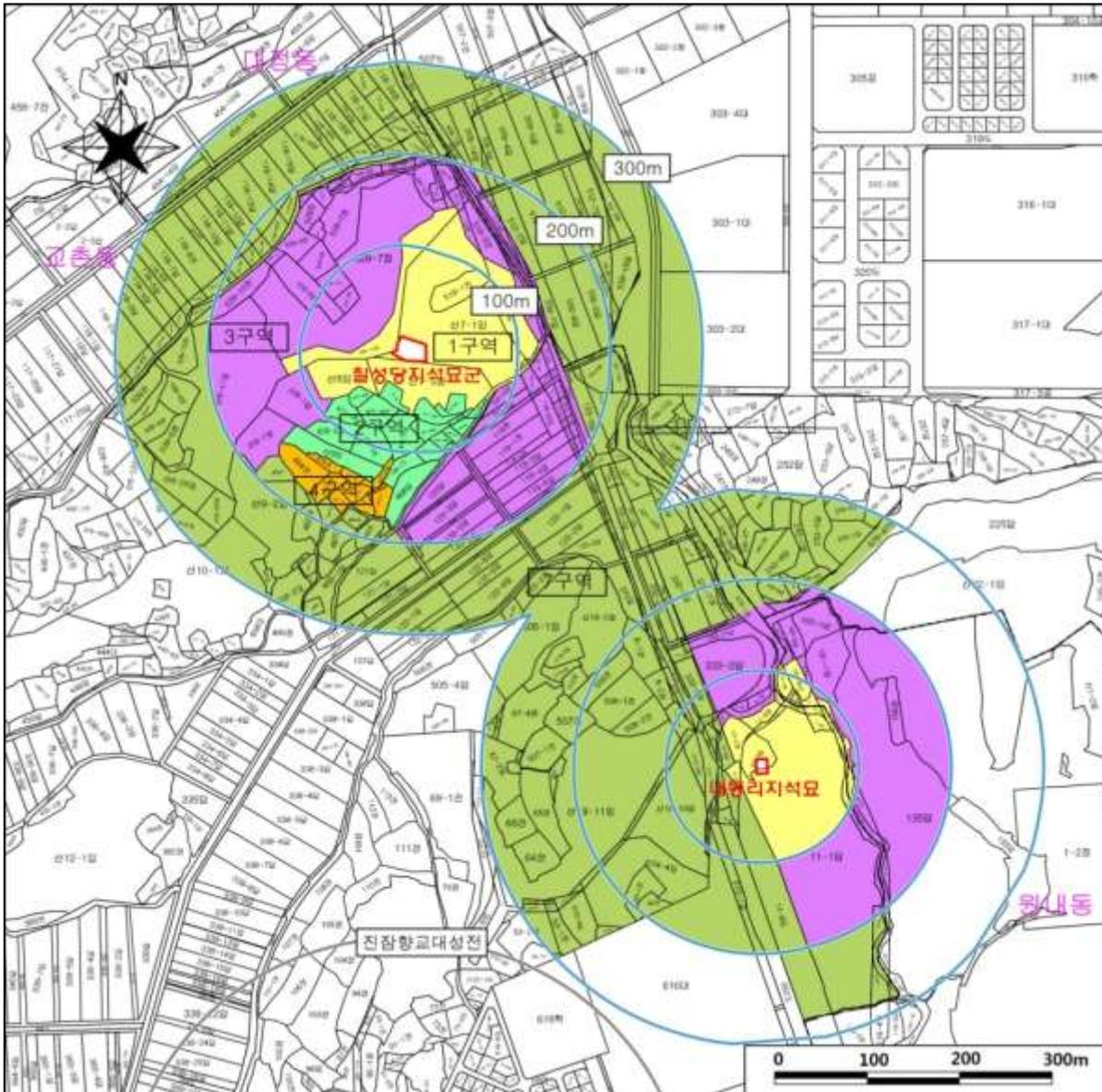
대전광역시 기념물 제3호, 문화재자료 제32호 내동리지석묘, 칠성당지석묘군

대전 유성구 교촌동 산7-1, 10-3, 11-1

현상변경 허용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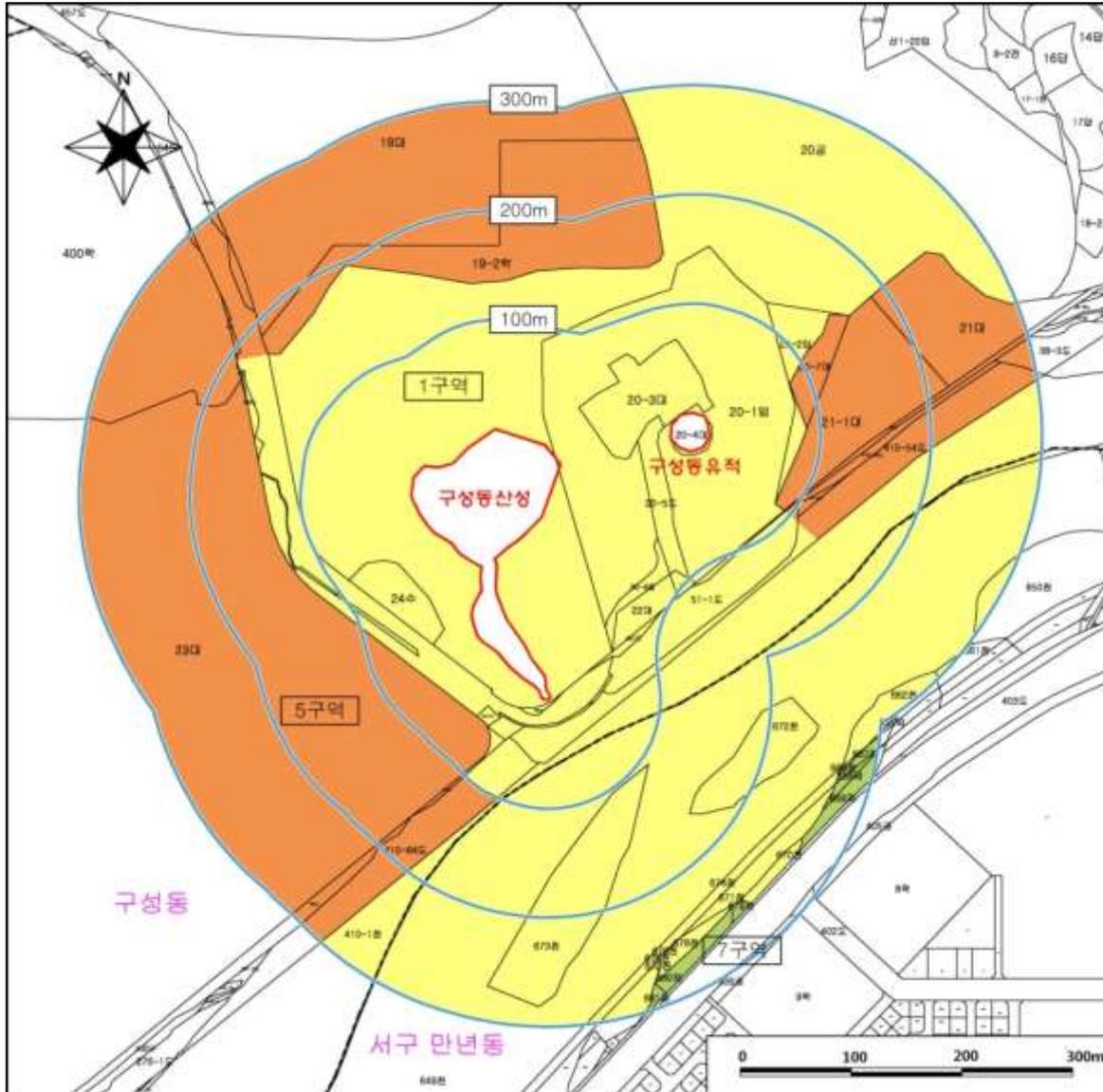
범례
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- 신축 불가	
2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
3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
4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
5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
6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
7구역	- 시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 내 연면적 증가는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 	



구성동산성, 구성동유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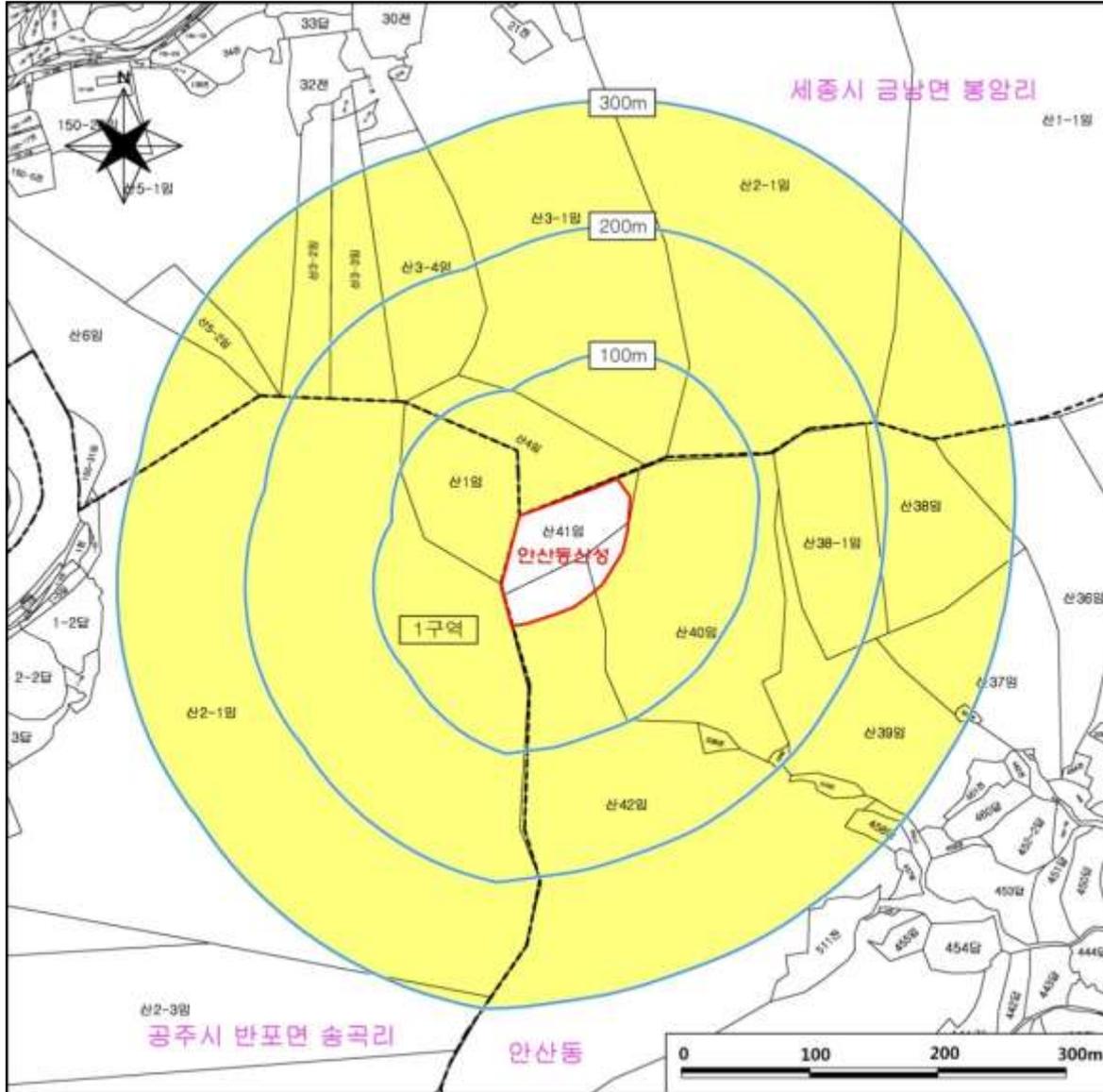
현상변경 허용기준



대전광역시 기념물 제6호, 제37호 구성동산성, 구성동유적		
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20, 20-1, 20-4		
현상변경 허용기준		
범례		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<table border="1"> <tr> <td>평슬라브</td> <td>경사지붕(3:10 이상)</td> </tr> </table>	평슬라브
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	
1구역	-신축불가	
2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 -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	
3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 -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	
4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 -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	
5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 -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	
6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 -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	
7구역	-시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 내 연면적 증가는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 	

안산동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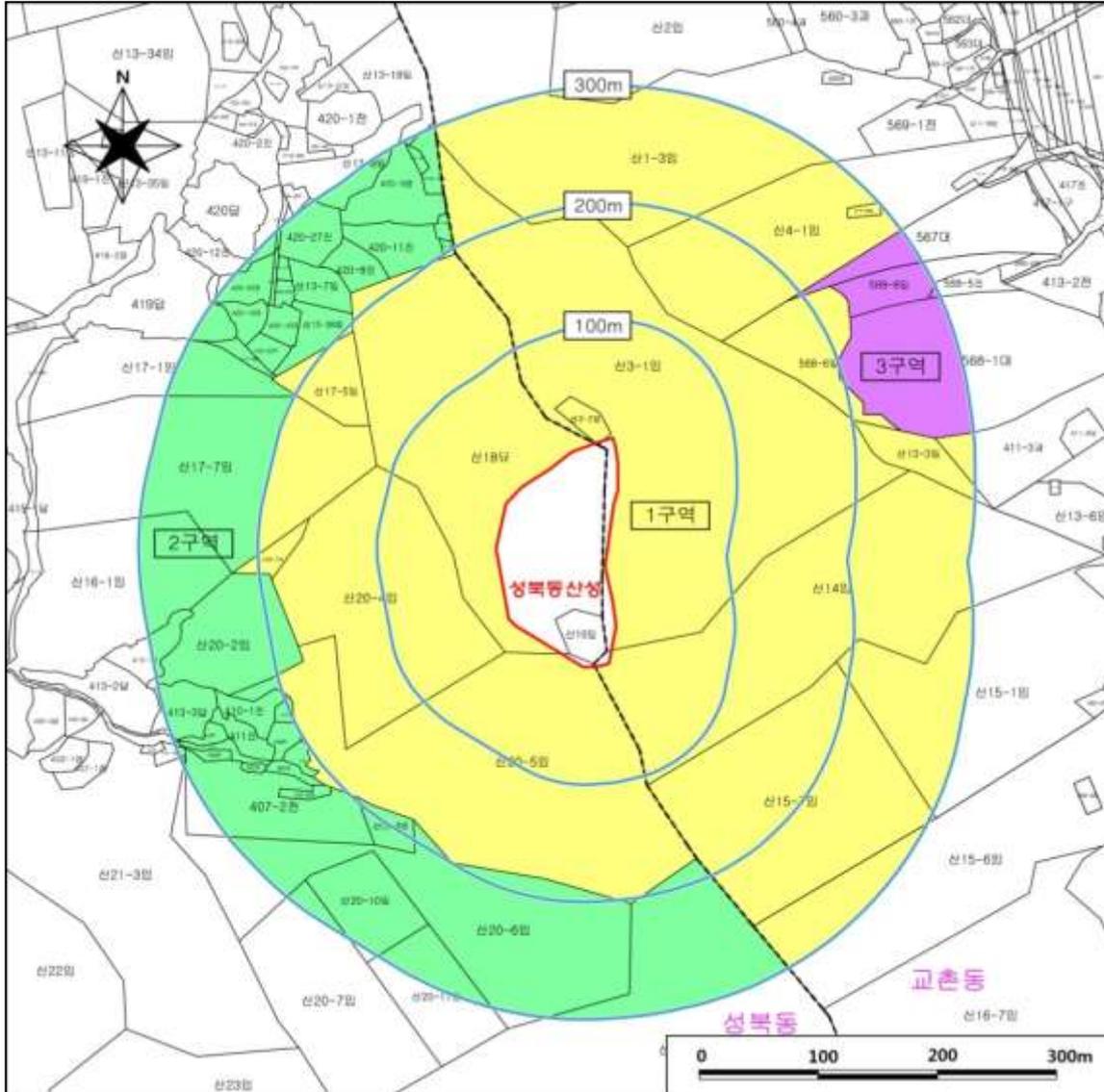
현상변경 허용기준



대전광역시 기념물 제16호 안산동산성		
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산동 산40의		
현상변경 허용기준		
범례		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-신축불가	
2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
3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
4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
5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
6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
7구역	-시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 내 연면적 증가는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 	

성북동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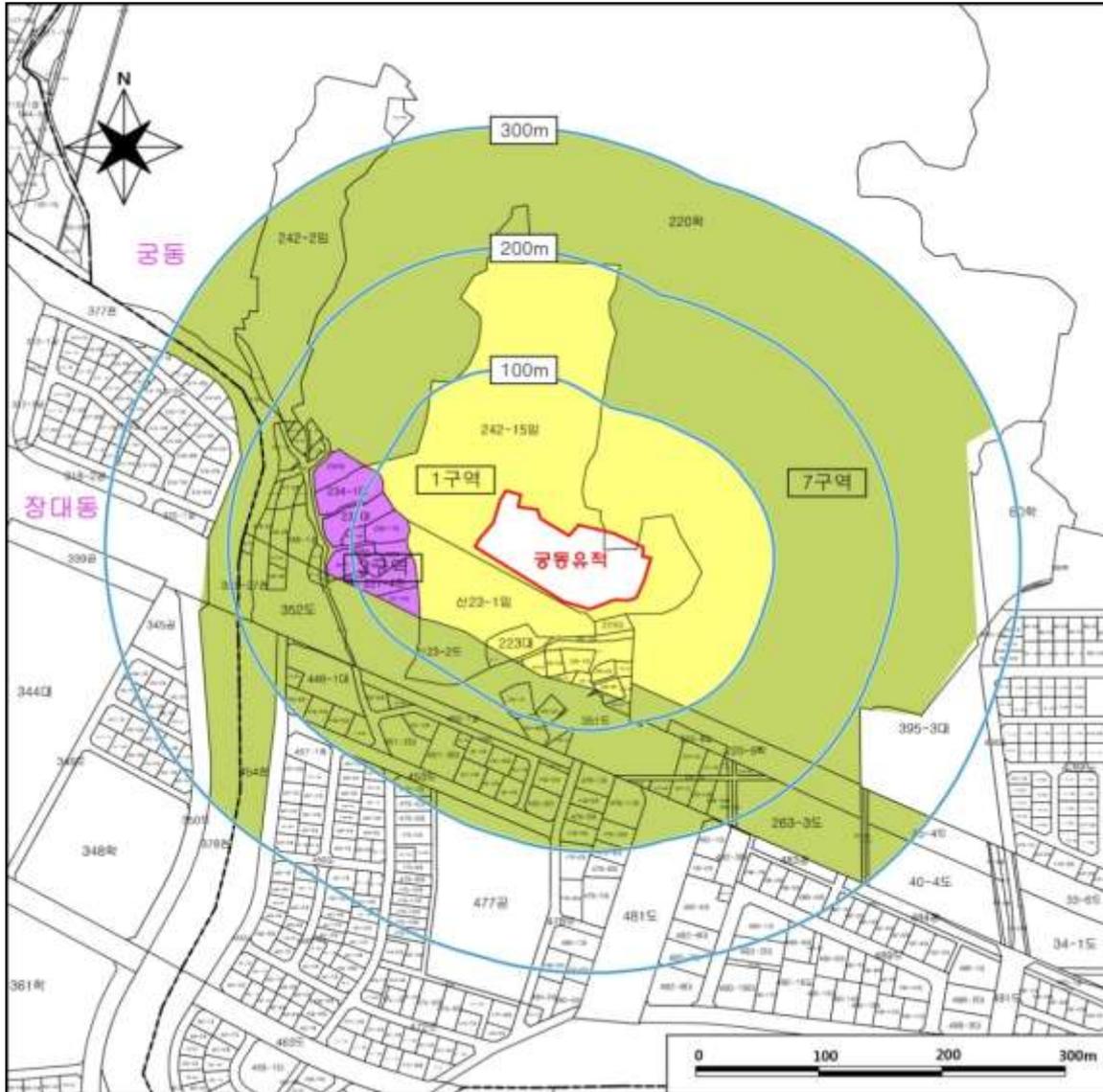
현상변경 허용기준



대전광역시 기념물 제18호 성북동산성		
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북동 산18의		
현상변경 허용기준		
범례		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-신축불가	
2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
3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
4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
5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
6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
7구역	-사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 내 연면적 증가는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 	

공동유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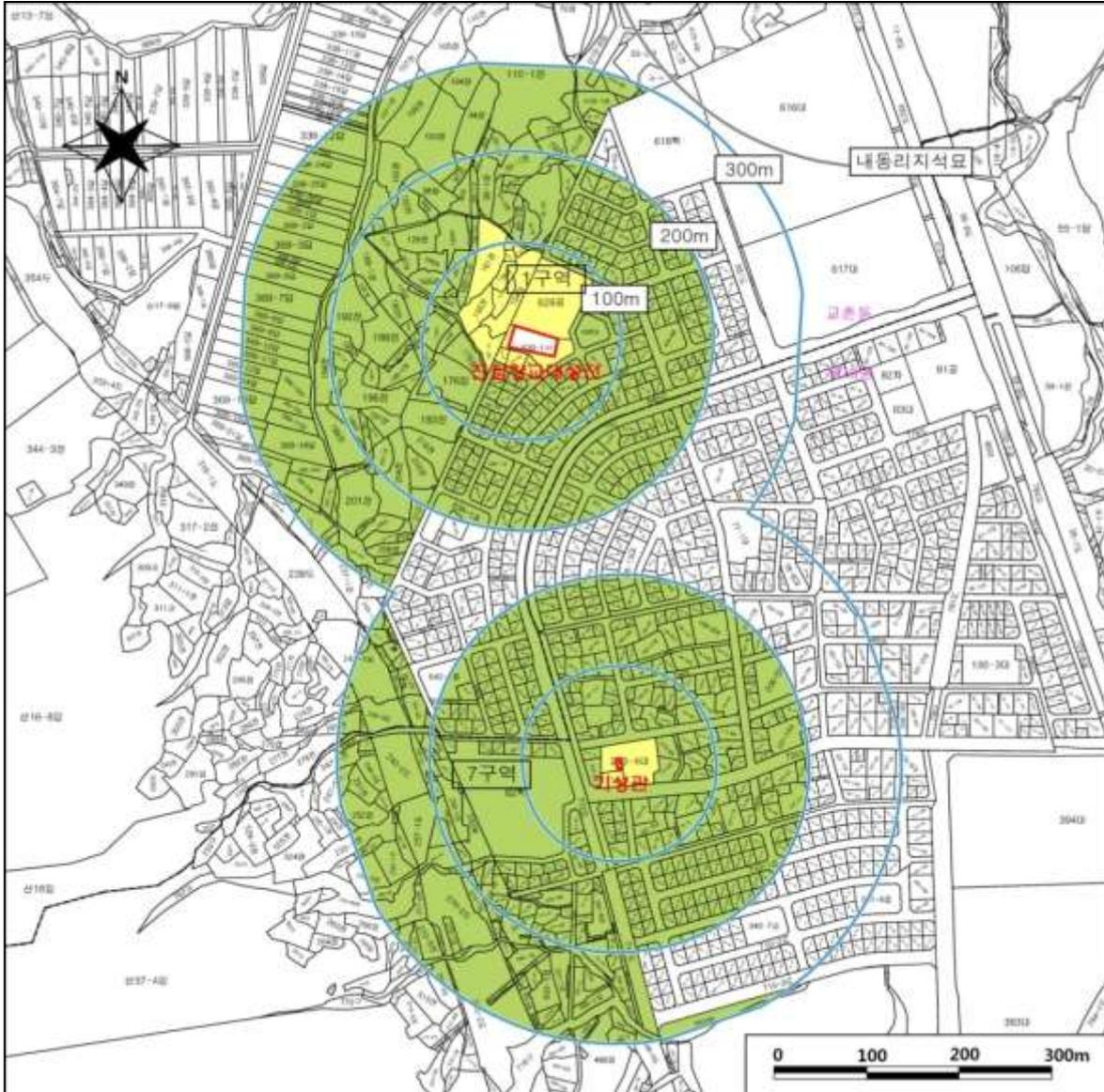
현상변경 허용기준



대전광역시 기념물 제39호 공동유적		
대전 유성구 대학로 99		
현상변경 허용기준		
범례		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- 신축 불가	
2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
3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
4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
5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
6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
7구역	- 시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동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 내 연면적 증가는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 	

진잠향교대성전, 기성관

현상변경 허용기준



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6호, 제29호 진잠향교대성전, 기성관

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로 67, 원내로 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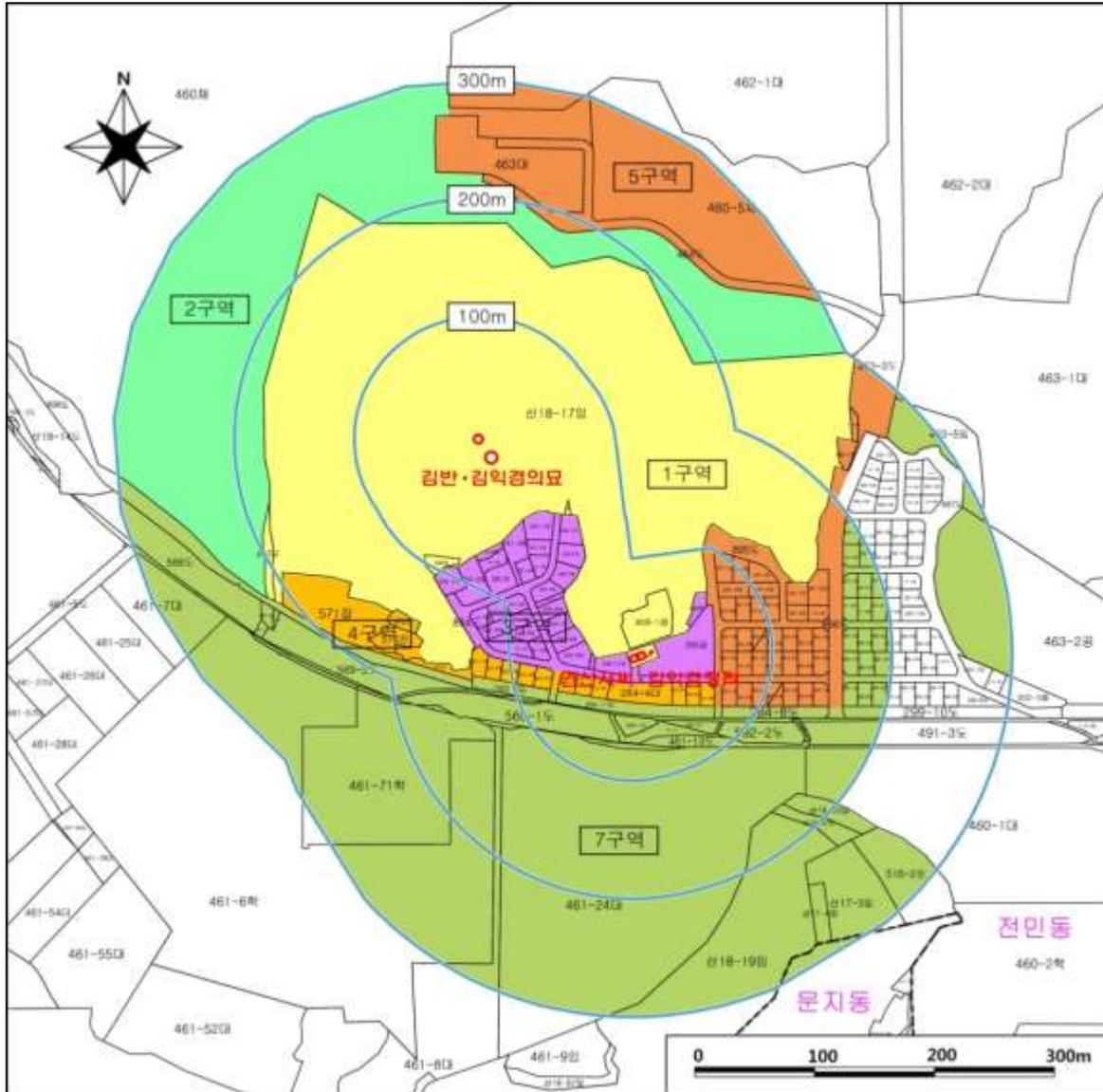
현상변경 허용기준

범례
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-신축불가	
2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
3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
4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
5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
6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
7구역	-시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 내 연면적 증가는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도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흰색을 지양한다. 	

김반 · 김익겸의묘, 연산서씨 · 김익겸정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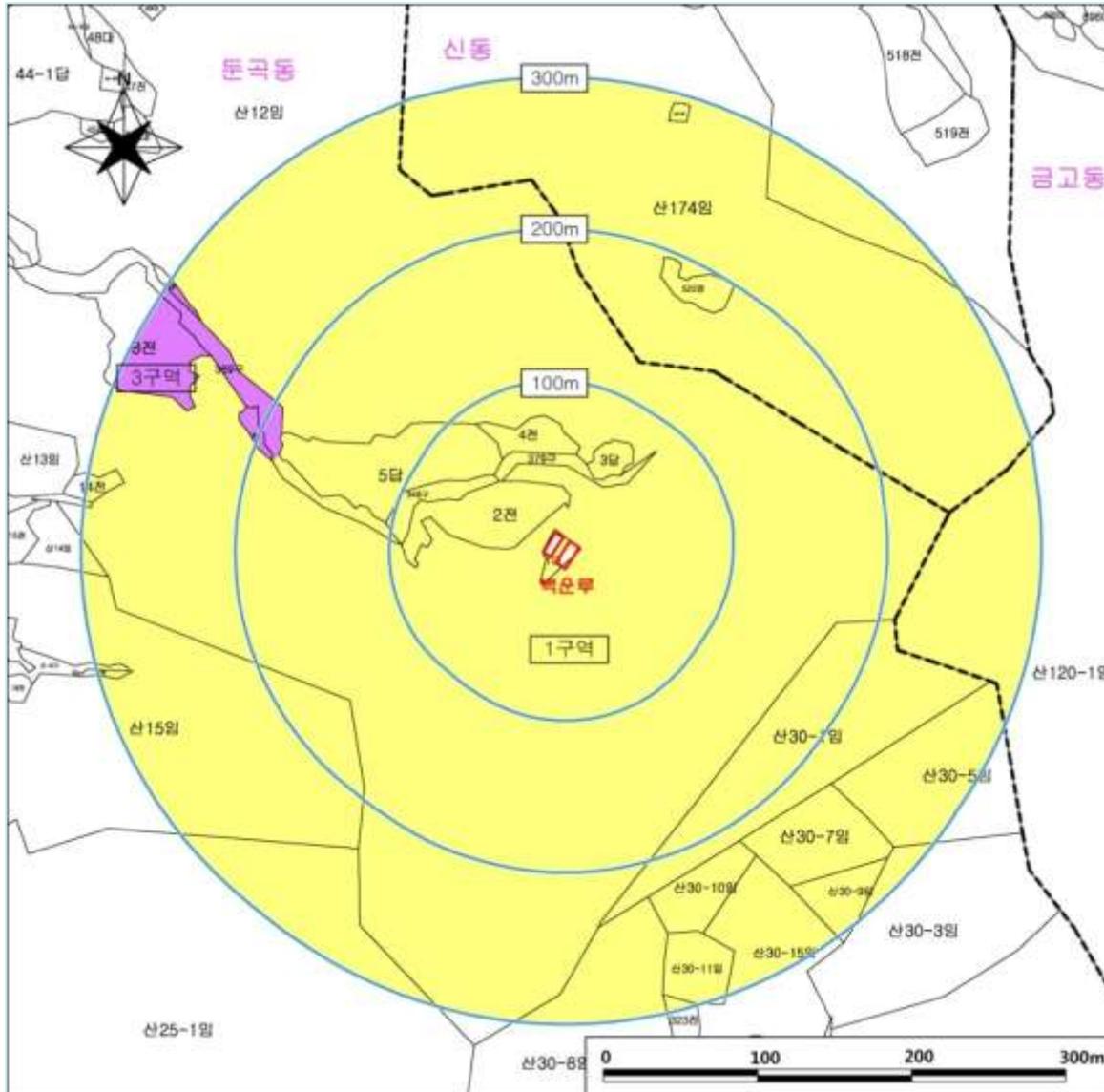
현상변경 허용기준



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7호, 제52호 김반·김익겸의묘, 연산서씨·김익겸정려		
대전 유성구 전민동 산18-54		
현상변경 허용기준		
범례		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- 신축 불가	
2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
3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
4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
5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
6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
7구역	-사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 내 연면적 증가는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 	

백운루

현상변경 허용기준



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54호 백운루		
대전 유성구 둔곡길 288		
현상변경 허용기준		
범례		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- 신축 불가	
2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
3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
4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
5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
6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
7구역	- 시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 내 연면적 증가는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분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 	

회덕 쌍청당, 송애당, 고흥류씨정려각 및 비, 은진송씨정려각

현상변경 허용기준



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호, 제8호, 제25호, 제24호
**회덕쌍청당, 송애당, 고흥류씨정려각
 및 비, 은진송씨정려각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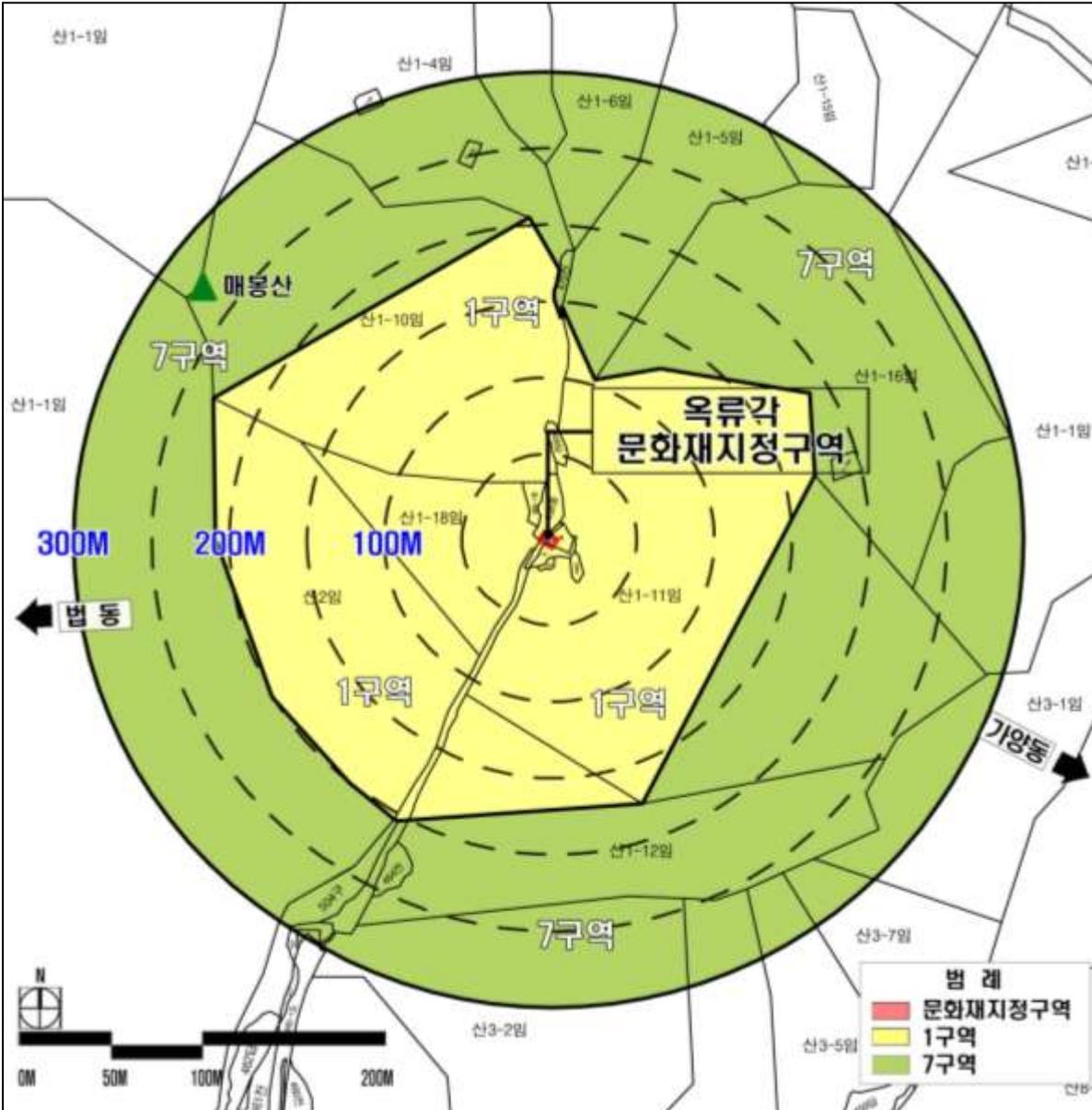
대전 대덕구 중리동71-1, 115, 498-1, 법동 205-5

현상변경 허용기준

범례		
—	문화재보호구역	
—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- 신축 불가	
2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
3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
4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
5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
6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
7구역	-사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 내 연면적 증가는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	

옥류각

현상변경 허용기준



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호 옥류각		
대전 대덕구 비래동 467		
현상변경 허용기준		
범례		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- 신축 불가	
2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
3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
4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
5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
6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
7구역	- 시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 내 연면적 증가는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 	

제월당 및 옥오재

현상변경 허용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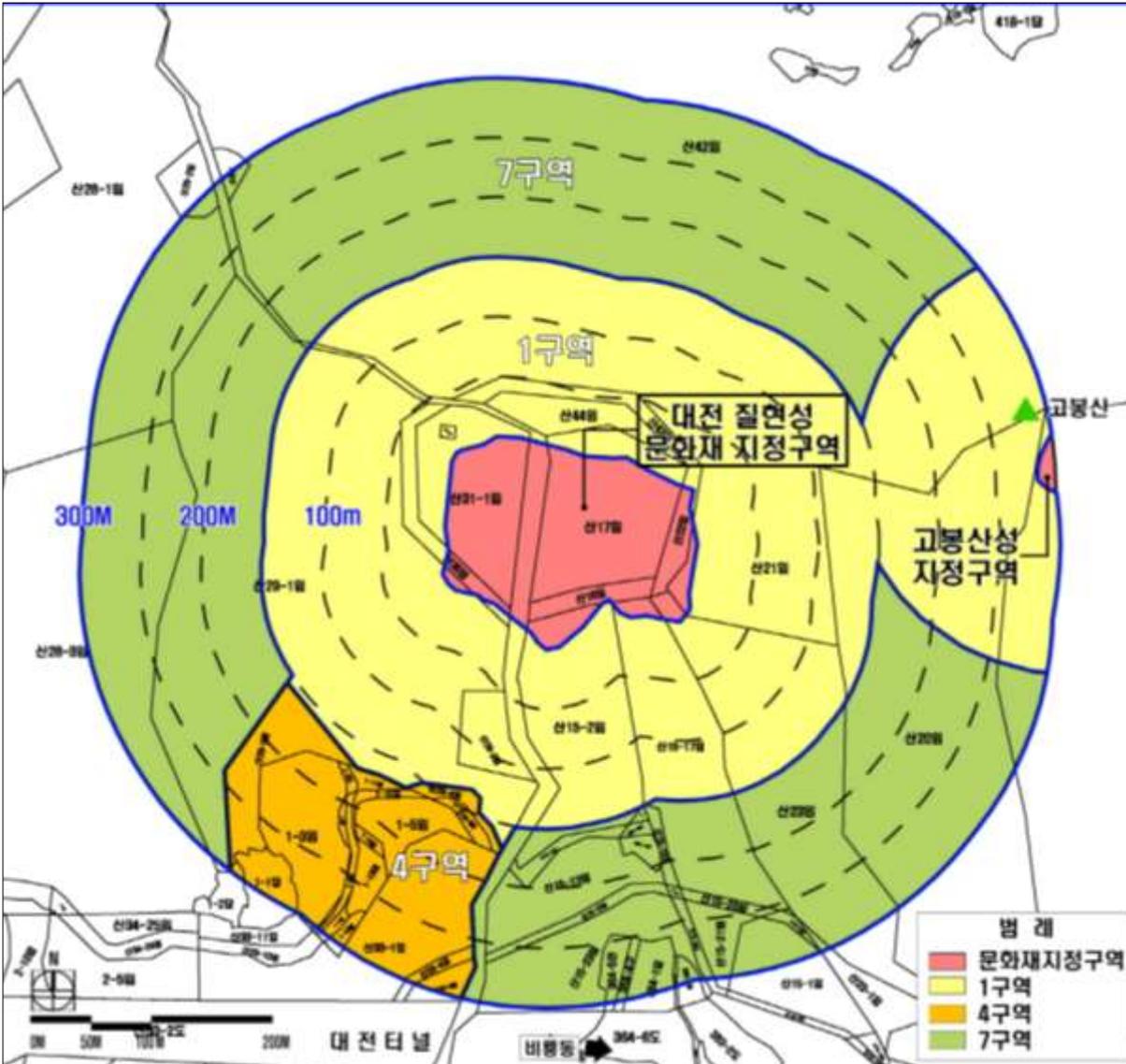


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9호 제월당 및 옥오재		
대전 대덕구 읍내동 74		
현상변경 허용기준		
범례		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평층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- 신축 불가	
2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
3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
4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
5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
6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
7구역	- 시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 내 연면적 증가는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평가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 	

질현성

현상변경 허용기준

대전광역시 기념물 제8호 질현성		
대전광역시 비래동 산31-1		
현상변경 허용기준		
범례		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-신축 불가	
2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
3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
4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
5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
6구역	-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	-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
7구역	-시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 내 연면적 증가는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 	



우술성, 회덕향교대성전

현상변경 허용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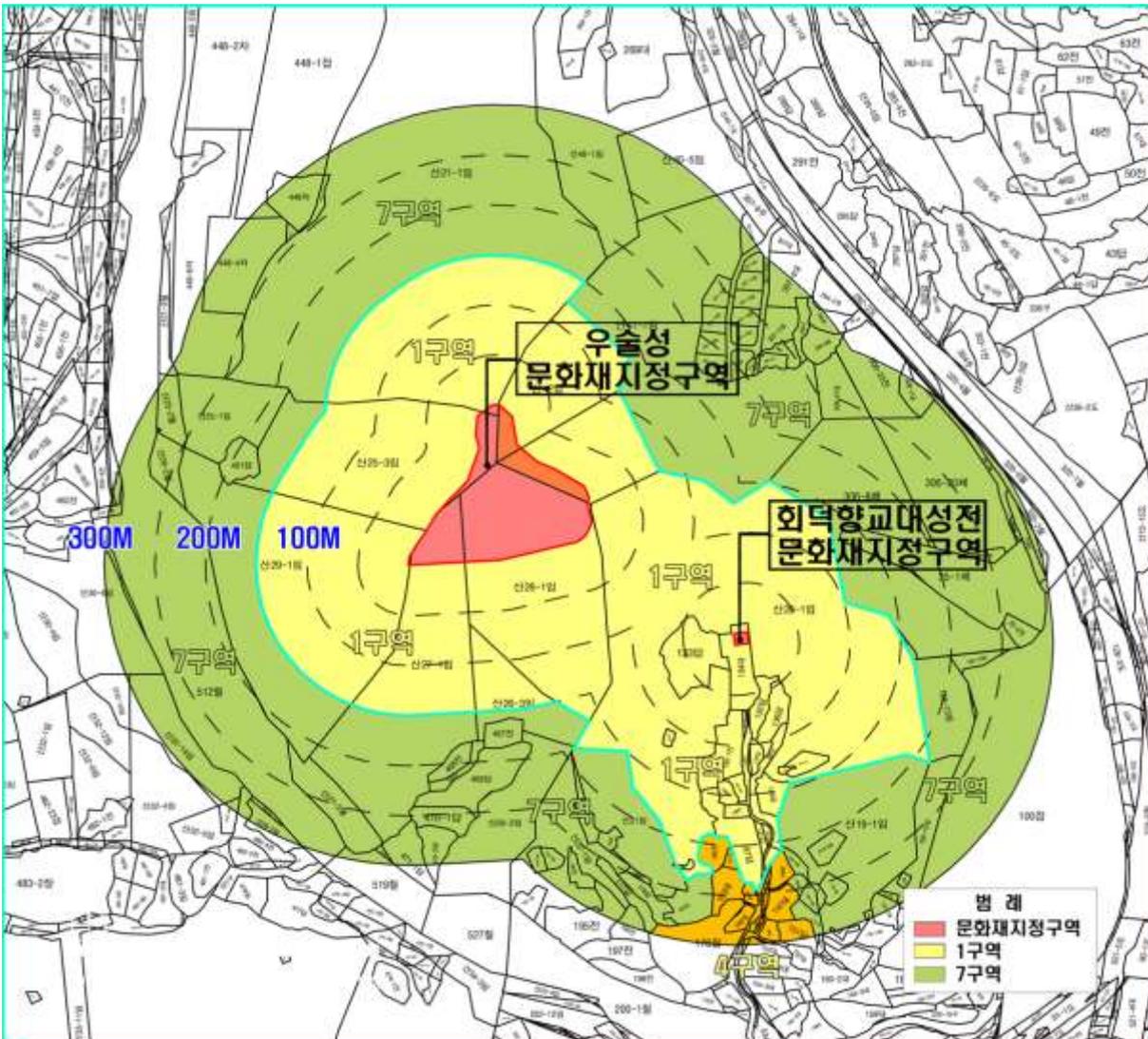
대전광역시 기념물 제9호, 문화재자료 제5호 우술성, 회덕향교대성전

대전 대덕구 신대동 산21-1 일원, 읍내동 134

현상변경 허용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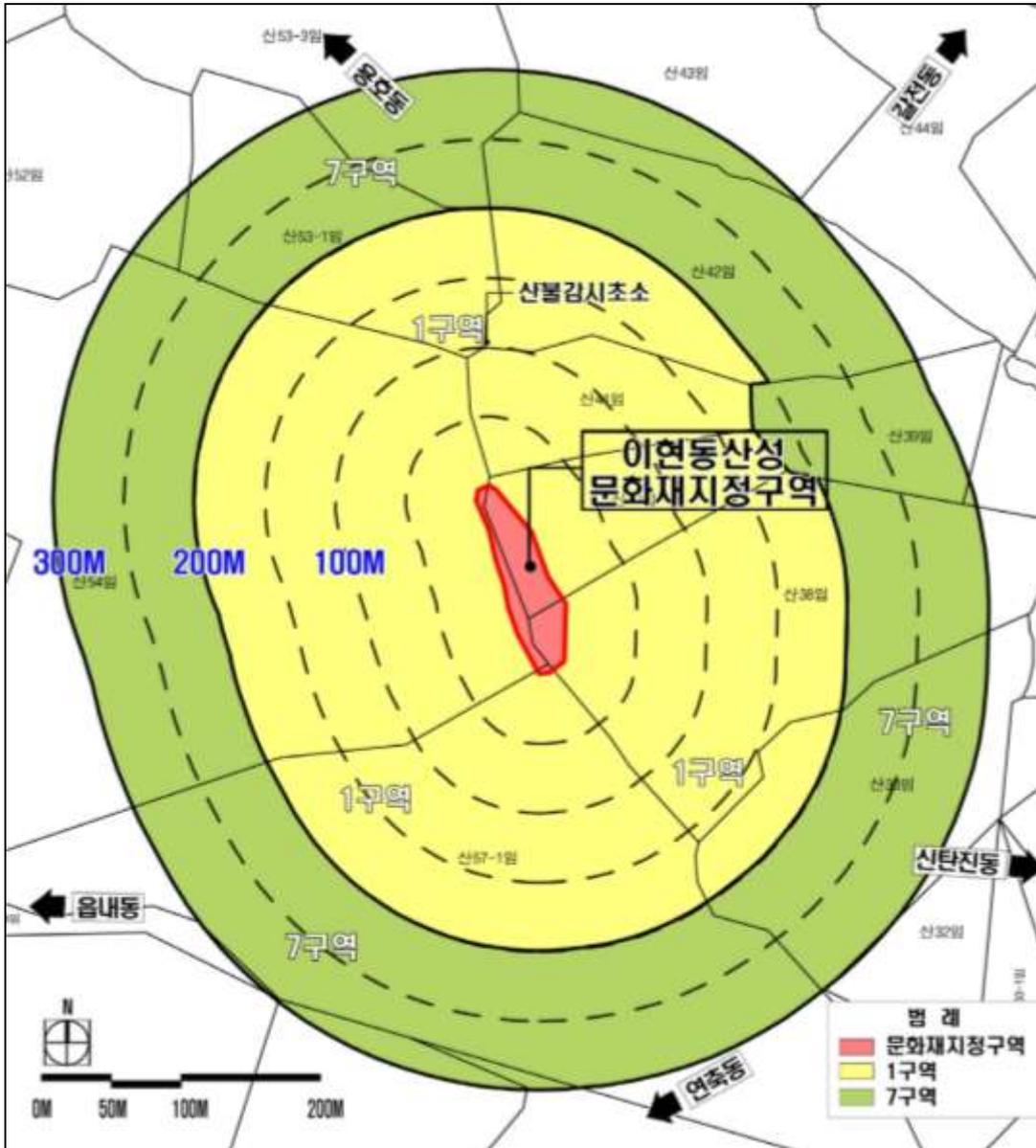
범례
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- 신축 불가	
2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
3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
4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
5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
6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
7구역	- 시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 내 연면적 증가는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완색을 지양한다. 	



이현동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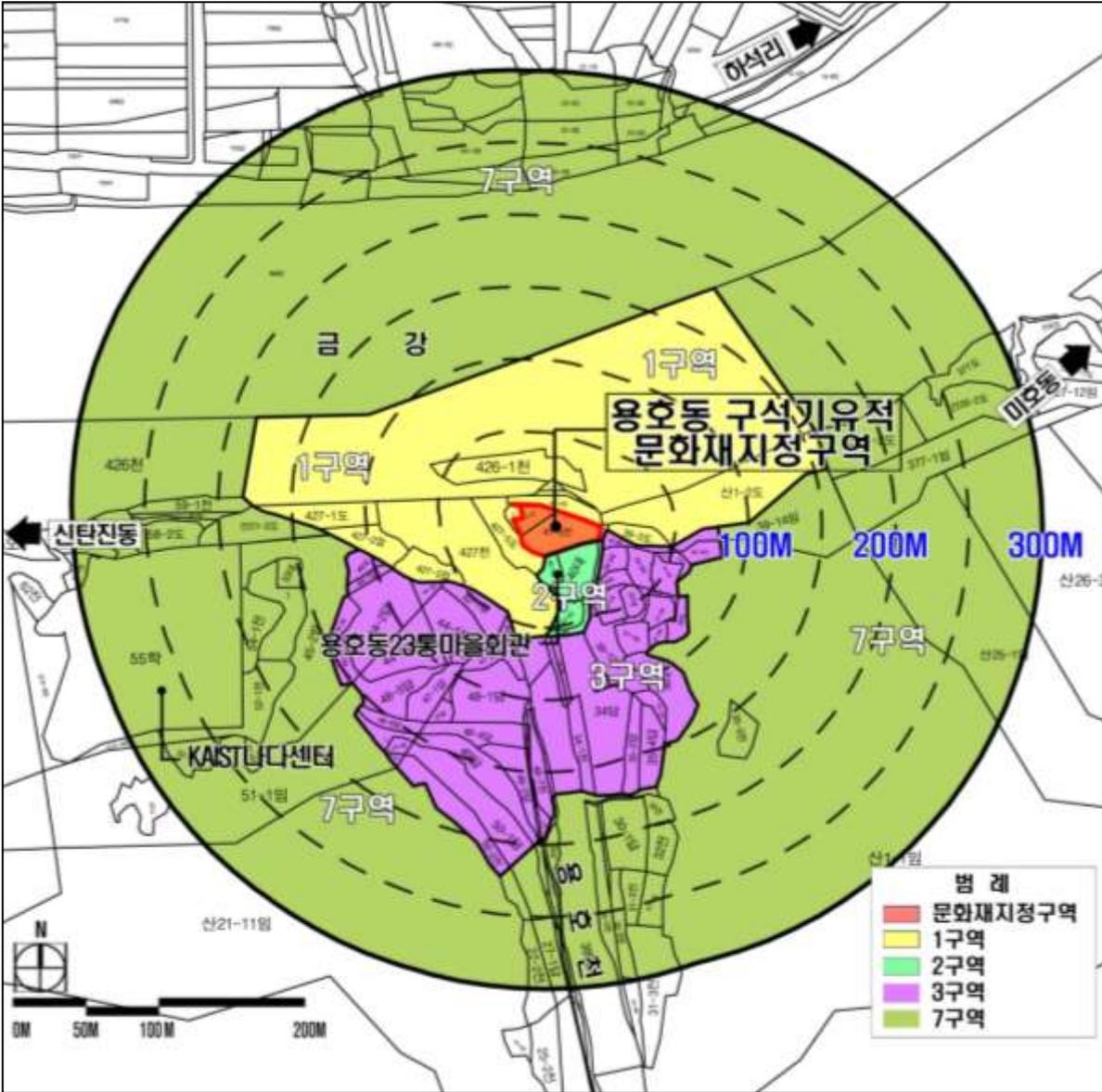
현상변경 허용기준



대전광역시 기념물 제31호 이현동산성		
대전 대덕구 이현동 산38 외		
현상변경 허용기준		
범례		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- 신축 불가	
2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
3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
4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
5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
6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
7구역	- 사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 내 연면적 증가는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 	

용호동 구석기유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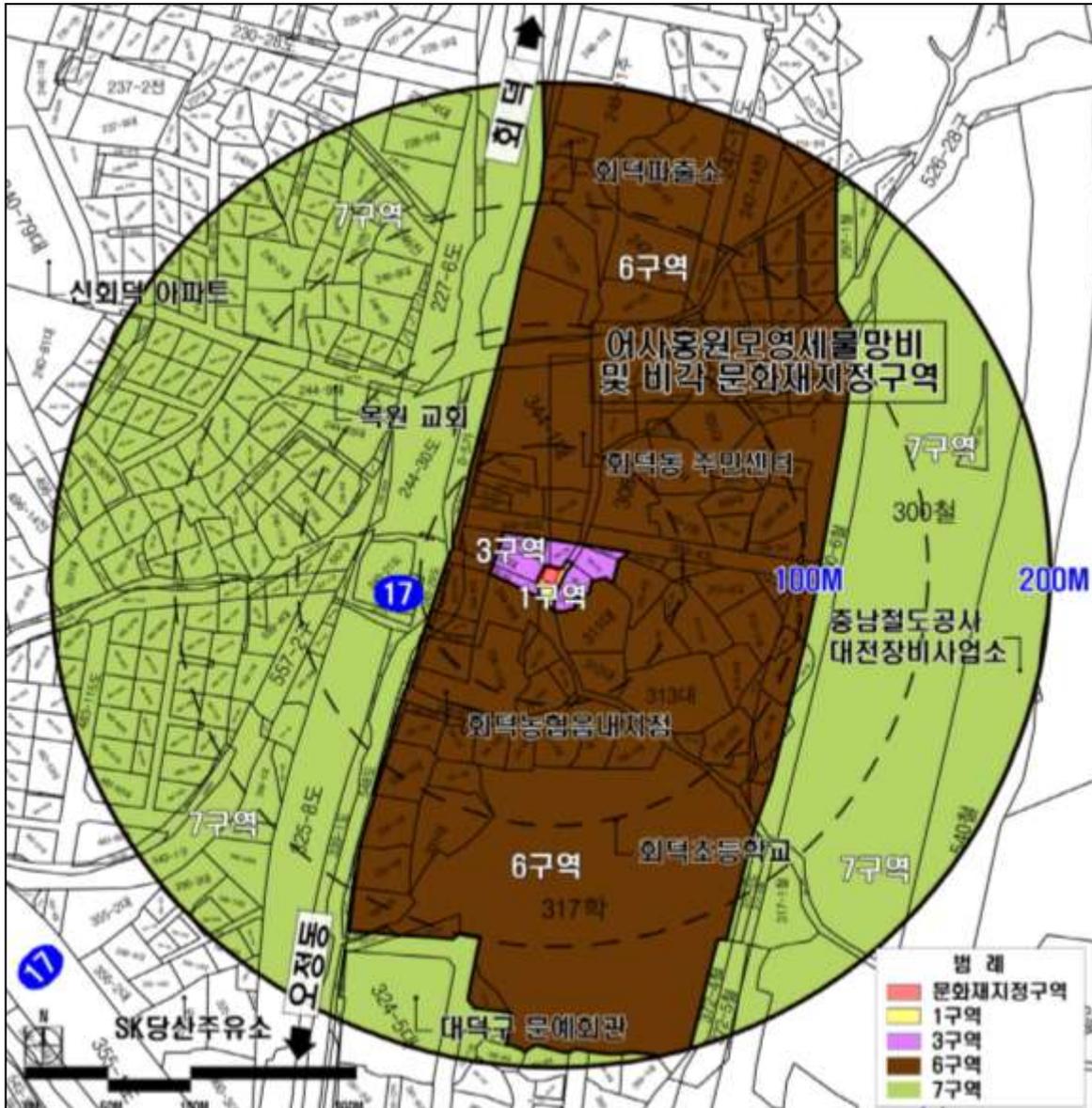
현상변경 허용기준



대전광역시 기념물 제42호 용호동유적		
대전 대덕구 용호동41-3 외		
현상변경 허용기준		
범례		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- 신축 불가	
2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
3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
4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
5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
6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
7구역	- 사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 내 연면적 증가는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에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 	

어사흥원모형세불망비

현상변경 허용기준



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7호 어사흥원모형세불망비 및 비각		
대전 대덕구 읍내동 547		
현상변경 허용기준		
범례		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평슬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- 신축 불가	
2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
3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
4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
5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
6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
7구역	- 사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 내 연면적 증가는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 	

오정동 선교사촌

현상변경 허용기준



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44호 오정동선교사촌		
대전 대덕구 오정동 133-23		
현상변경 허용기준		
범례		
	문화재보호구역	
	문화재영향검토구역(100m 간격)	
구분	허용기준	
	평층라브	경사지붕(3:10 이상)
1구역	- 신축 불가	
2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(1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 (1층 이하)
3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(2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(2층 이하)
4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(3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(3층 이하)
5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(4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(4층 이하)
6구역	-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(5층 이하)	-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(5층 이하)
7구역	- 사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 내 연면적 증가는 10%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.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축사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한다. -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한다. - 보존지역 내 건축물의 지붕색은 원색을 지양한다. 	